해외 보험동향

총괄	한상용 (연구위원)

해외 보험동향	
일본	이상우 (수석연구원)
중국, 홍콩, 대만	이소양 (연구원)
중국, 홍콩, 대만	김연희 (연구원)
동남아, 중남미	장윤미 (연구원)
북미	강윤지 (연구원)
영국, 유럽	이연지 (연구원)
독일	이승주 (연구원)

09호

[2022 봄호]

KiRi 보험연구원

목 차

Ⅰ.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캐나다 금융감독청의 IFRS 17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체계 검토 1
2. 호주 퇴직연금 최소인출률(Minimum drawdown rates) 축소안 연장 발표 3
3. 독일 전동킥보드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제도 평가 6
4. 프랑스 연금개혁 시도 속 법정 퇴직연령 상향 조정 공약 9
5.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핸드북 발표 11

Ⅱ.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제3자 소송 금융산업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인플레이션 증가 15
2. 호주 생명보험 업계의 소비자 유전자 검사결과 이용에 관한 검토 내용 18
3. 독일 생명보험산업의 일시납부 활성화 현황 22
4. 영국의 보험료 신용결제를 활용한 '유사 상호회사' 인슈어테크 LAKA 사례 24
5. 중국 기업 사이버보험의 시장동향 26
6. 중국 양로산업 동향 30
7. 일본 보험그룹의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확산 동향 33

[특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독일편 37

[특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영국편 47

Ⅰ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캐나다 금융감독청의 IFRS 17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체계 검토

요 약

IFRS 17이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체계인 LICAT을 검토하고 있음. OSFI는 LICAT 2023 지침 초안에 대한 캐나다 보험계리사협회의 수정 제안을 반영하고, 조사 및 테스트를 거친 후 2022년 8월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 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이 2023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체계인 LICAT(Life Insurance Capital Adequacy Test)를 검토하고 있음

- 2021년 OSFI는 LICAT 2023 지침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캐나다 보험계리사협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이하, 'CIA'라 함)는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수정을 제안하였음

○ LICAT은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사업 고유 위험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총 자본 비율(Total ratio)과 기본자본 비율(Core ratio)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OSFI는 이에 대해 각각 100%, 70%의 목표 수준을 설정함

- LICAT 측정을 위해 필요한 가용 자본(Available capital)은 자본 성격에 따라 Tier 1 자본과 Tier 2 자본으로 나뉘며, 총 자본 비율은 가용 자본을 근거로 계산되며 기본자본 비율은 Tier 1 자본을 바탕으로 계산됨
  - Tier 1 자본은 기본자본으로, 자기자본 중 보통주 자본과 기타 기본자본을 포함하는 실질 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반면, Tier 2 자본은 보완자본으로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으로 이루어짐
- 총 자본 비율과 기본자본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됨
  - 총 자본 비율=(가용 자본+추가인정액+적격예치금)/지급여력기준금액
  - 기본자본 비율=(Tier 1 자본+추가인정액의 70%+적격예치금의 70%)/지급여력기준금액

○ LICAT 2023 지침 초안은 기존에 적용하던 LICAT 2019와 비교하여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한 수정은 미흡한 단계지만, OSFI는 현재 자본 정책과 일관된 자본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IFRS 17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LICAT을 조정 중에 있음

- 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리 펀드(Segregated fund) 보증 사업을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표준 방식의 적용 날짜를 2025년 1월 1일(즉, 2년)로 연장해 IFRS 17 적용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함
  - 분리 펀드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투자형 개인연금보험으로, 캐나다 개인연금 시장은 분리 펀드의 비율이 80%대로 매우 높으며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 등 생명보험의 자산운용이 적용되는 일반펀드와는 분리하여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사항[1]이 있음[2]

○ 현재 CIA는 정량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최종 지침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3]

- **(이자율 위험)** LICAT 지침에 따른 내부수익률(IRR)의 할인율 정의를 IFRS 17에 맞춰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찰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거나 무위험률을 낮추는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분리 펀드)** LICAT 지침에는 분리 자금에 대한 자본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된 총 요구사항(Total Gross Calculated Requirement, 이하, 'TGCR'라 함)'이 음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IFRS 17의 '총 보험수리적 부채(Total net actuarial liability)'는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을 제안함
  - 순 보유 보험수리적 부채가 음수라면, 순 필요자본(Net required capital)이 TGCR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TGCR 값에 대한 음수 허용을 제안함
- **(소극적 적립금)** 실제 데이터를 통해 소극적 적립금[4](Negative reserve) 공제에 관한 규칙이 비현실적임을 제시하며 해당 개념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 지침 초안에 맞춰 OSFI가 발표한 생명보험 회사 데이터를 대입해 계산하면, 캐나다 생명보험 업계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LICAT에 따른 감독 목표(총 자본 비율 100%, 기본자본 비율 70%)를 충족하려면 총 자본과 총 Tier 1 자본이 각각 780억 달러, 786억 달러가 필요함
  - 총 Tier 1 자본은 총 자본보다 낮아야 하므로 이 결과 값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는 소극적 적립금 공제에 의해 발생함

---

1) LICAT 지침을 살펴보면 분리 자금에 대한 자본 요건 등 분리 펀드에 관한 규제(제7장)는 일반 펀드와 구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분리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를 위한 지침(Revised Guidance for Companies that Determine Segregated Fund Guarantee Capital Requirements Using an Approved Model)도 따로 존재함

2) LIMRA(2022), "Canadian Individual Annuity Sales"

3) CIA(2021. 10. 15), "Advice Statement to OSFI on the Draft LICAT 2023 Guideline"

4)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액의 임시손실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금을 말함

○ CIA의 수정 제안 반영과 더불어, OSFI는 이번 IFRS 17을 반영한 LICAT 개정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정량적 영향조사(Quantitative Impact Study; QIS)와 감응도 테스트(Sensitivity test)를 실시한 후 2022년 8월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5)6)]

○ 또한, OSFI는 2022년 4월에 '구조화된 보험 지급 방식(Structured settlement)[7)]에 대한 회계 지침(D-5)'및 IFRS 9를 개정해 발표하였으며, 이 역시 LICAT 2023 지침과 마찬가지로 IFRS 17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8)]

- 동 회계 지침은 구조화된 보험 지급 방식을 위한 연금 및 관련 보험 부채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회계 처리 및 보고에 대한 방법을 제공함
- IFRS 9 개정의 경우, 특히 IFRS 9의 3.2조(손해보험회사를 위한 연간 공시)와 관련하여 IFRS 17과의 일관성을 위해 용어를 수정하였음

2. 호주 퇴직연금 최소인출률(Minimum drawdown rates) 축소안 연장 발표[9)]

요 약

호주에서는 은퇴자가 매년 퇴직연금 잔액에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인출률 제도가 운영되어 옴. 그러나 금융변동성 확대로 인해 최소인출률이 높아지면 은퇴자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호주 정부는 최소인출률 축소안을 2023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함

○ 호주에서는 은퇴자가 퇴직연금 잔액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인출률 제도가 운영되어 왔음

5) OSFI(2020. 9. 30), "LICAT, MCT and MICAT review for IFRS 17"

6) OSFI는 LICAT의 지침을 발행하고, CIA는 실무기준(Standards of practice)이나 교육노트(Educational note) 등을 발행함

7)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보상받는 방식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 일부를 생명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함

8) OSFI(2022. 4), "Accounting for Structured Settlements"

9) https://www.investordaily.com.au/superannuation/51035-government-extends-reduction-to-minimum-super-drawdown-rates

- 호주의 특정 퇴직연금 가입자 혹은 연급수급자(Annuitant)는 은퇴계좌[10]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최소인출률 제도임
- 1994년 호주 정부는 은퇴자로 하여금 은퇴계좌 잔액을 효율적으로 소비·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인출률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약 180만 계좌가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최소인출률은 매년 7월 1일자 은퇴계좌 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연령에 따라 4~14%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호주 정부가 이에 대해 적정수준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함
  - 요율이 높을 경우 은퇴자가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져 소비자가 은퇴 후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요율이 낮을 경우 은퇴자금의 소비가 경제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11]

○ **최근에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호주 정부는 은퇴자로 하여금 은퇴자금의 소비·관리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인출률을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함**

- 2020년 3월 호주 정부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19가 은퇴자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최소인출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행함
  - 호주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8. 7~2011. 6 기간 동안 최소인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한 바 있고, 이 같은 영향이 완화된 2011. 7~2013. 6 기간 동안 동 요율을 25%로 낮춘 바 있음
- 최소인출률 축소안은 코로나19 이후 매년 연장 적용되어 왔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음

○ **2022년 3월 호주 정부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최소인출률 축소안을 1년 더 연장 유지하여 운영할 것이라 밝힘[12]**

- 2022년 3월 25일 호주 정부는 최소인출률 축소안을 2023년 6월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발표함
- 최소인출률 축소안에 따라 65세 미만의 경우 2%, 65~74세의 경우 2.5%, 75~79세의 경우 3%, 80~84세의 경우 3.5%, 85~89세 4.5%, 90~94세 5.5%, 95세 이상 7%의 요율이 적용됨

---

10) 본고에서 의미하는 은퇴계좌란 계정 기반의 퇴직연금 및 연금(Account-based pensions and annuities)을 의미하며, 이는 급부할당 퇴직연금 및 연금(Allocated pensions and annuities) 및 시장연계 퇴직연금 및 연금(Market-linked pensions and annuities) 상품을 포함함

11) https://www.apra.gov.au/sites/default/files/Balnozan-Modelling-heterogeneous-drawdown-behaviours-in-phased-withdrawal-retirement-income-products.pdf

12) https://www.investordaily.com.au/superannuation/51035-government-extends-reduction-to-minimum-super-drawdown-rates

• 호주 은퇴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절반으로 인하된 최소인출률을 적용받고,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폴트 값으로 전환된 요율을 적용받을 예정임

〈표 1〉 호주 특정 퇴직연금 및 연금에 적용되는 최소인출률 제도

(단위: %)

연령	한시적으로 도입된 최소인출률 축소안 적용 (2023년 6월 30일 종료)	최소인출률 디폴트 값 적용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65세 미만	2.0	4.0
65~74세	2.5	5.0
75~79세	3.0	6.0
80~84세	3.5	7.0
85~89세	4.5	9.0
90~94세	5.5	11.0
95세 이상	7.0	14.0

자료: https://www.australiansuper.com/retirement/minimumdrawdowns

• 만일 은퇴자가 회계연도[13]의 중간 시점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일 수만큼 비례 계산된 최소인출 금액이 정해지고 동 금액에서 50%가 줄어든 최소인출 금액을 인출해야 함

○ 최소인출률 축소로 호주 소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서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은퇴자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비자의 은퇴계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인출률이 줄어듦으로써 은퇴자는 자금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최소인출률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져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

13) 호주에서는 회계연도의 계산법이 금년 7월 1일~명년 6월 30일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회계연도 2022/23라 함은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을 의미함

3. 독일 전동킥보드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제도 평가

요 약

2019년 독일 연방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 독일 보험협회(GDV)는 동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손실액을 집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제도 도입이 가져 온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

○ **2019년 독일 연방정부는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 eKFV)'을 시행함**

-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나 교외에서 소형전기차가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로 주목을 받으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연방정부는 2019년 6월 근거리 주행에 사용되는 전동킥보드 도로주행의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정의, 주행요건, 보험 등을 포괄하는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eKFV)을 제정하고 시행함

〈표 2〉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eKFV) 요약

기준	내용
장치요건	• 전기를 동력으로 최대속도 6km/h 이상, 20km/h 이하로 주행함(eKFV §1) • 크기는 폭 70cm 이하, 높이 140cm 이하, 탑승자 제외 무게는 55kg 이하여야 함(eKFV §1) • 연속 정격 출력은 최대 500와트를 초과할 수 없음(eKFV §1)
운행요건	• 독일 자동차 등록규정(Fahrzeug-Zulassungs Verodrnung; FZV)에 따라 보험스티커를 부착해야 함(eKFV §2) • 두 개의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함(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하나가 최소 제동력의 (3.5m/s2) 최소 44%를 커버해야 함)(eKFV §4) • 하나 이상의 경적을 장착해야 함(eKFV §6) • 측면에 노란색 반사경이나 타이어에 반사되는 흰색 줄무늬 장치를 장착해야 함(eKFV §5)
운전자요건	• 운전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eKFV §3) • 운전자 이외의 자가 탑승하거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것은 금지됨(eKFV §8)
운행방법	•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일반 도로에서 운행해야 함 (eKFV §10) • 도로 운행 시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일렬로 주행해야 함(eKFV §11) • 방향 변경 시 자전거와 같이 수신호로 이를 표시해야 함(eKFV §11)

자료: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 – eKFV); 황현아(2019),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을 참고하여 작성함

- 동 규정은 전동킥보드에 보험스티커 부착의무를 부과하여(eKFV §2)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자동차의무보험법(Pflichtversicherungsgesetz; PflVG)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된 보험스티커(Versicherungsplakette)[14]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빙할 수 있음
  - 전동킥보드 책임보험의 최소보장한도는 대인배상 750만 유로, 대물배상 122만 유로, 재산상손해 5만 유로로 규정함[15]

○ **동 제도의 도입 이후 독일 보험회사는 자차전부보험(Vollkaskoversicherung)을 제외한, 전동킥보드 전용 책임보험 및 자차부분보험(Teilkaskoversicherung)[16]을 판매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전용 책임보험의 연 보험료는 약 8유로에서 110유로까지 다양하며, 연령에 따라 할증요율이 적용됨(2022년 3월, 평가 Top7 상품 기준)[17]
- 그러나 운전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나 타인의 고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어, 이륜차보험과 달리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차전부보험상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18]

○ **독일 보험협회(GDV)는 2019년 전동킥보드 책임보험 의무화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손실액을 집계한 통계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동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19]

- 2020년 기준 독일에서 약 18만 대의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1,150건의 제3자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음
  - 독일 연방통계청 집계 결과 동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해 총 5명이 사망하고 386명이 중상, 1,90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155건의 사고에서 인명피해사고 비율은 0.8%를 차지함[20]

---

14) 보험스티커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종류는 검정, 파랑, 녹색 세 가지 색상을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변경됨. 매년 2월 말 전년에 부착한 스티커의 유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변경된 색상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15) Anlage Pflichtversicherungsgesetz – zu § 4 Abs. 2(독일 자동차의무보험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별표)

16) 독일의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크게 책임보험(Haftpflicht), 자차부분보험(Teilkasko). 자차전부보험(Vollkasko)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자차부분보험은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되는 항목을 제외한 외부 요인(자연재해, 야생동물 충돌, 절도 등)에 의해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며, 자차전부보험은 자차부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함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함

17) Stern(2022), "7 unterschiedliche E-Scooter-Versicherungen im Vergleich – finden Sie Ihre beste E-Scooter-Versicherung mit maximalen Versicherungsschutz – unser Test bzw. Ratgeber 2022"

18) Allianz(2019), "E-Scooter Versicherung 2022: Günstiger Schutz"

19) GDV(2022. 2. 14), "E-Scooter verursachen hohe Schäden"

20) 독일 연방통계청(2021. 3. 26), "2,155 E-Scooter-Unfälle mit Personenschaden im Jahr 2020"

- 차종별 평균 보험손실액을 집계한 결과 승용차는 4,550유로, 소형이륜차(오토바이) 3,700유로,[21] 전동킥보드 3,850유로로, 전동킥보드의 보험손실액이 오토바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GDV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소형이륜차와 비슷한 규모의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전동킥보드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함

○ **그러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점에서, 현 제도의 법적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함**[22]

-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 제7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 의무가 있음
- 반면 전동킥보드는 eKFV 제1조에 따르면 자동차로 인정받지만, 최대 20km/h까지 주행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StVG) 제8조에 따라 배상책임에서 제외됨
- 따라서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측면에서 운전자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예로 뮌스터 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StVG) 제8조를 근거로 원고(자동차 운전자)가 피고(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한 바 있음[23]

21) 해당 통계에서 정의하는 오토바이란 최대 배기량 50ccm을 배출하고 최대 속도 45km/h를 낼 수 있는 소형 오토바이, 스쿠터 등과 같은 차량이며 보험등록번호(Versicherungskennzeichen)가 기재된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22) Verkehrsanwälte(2020), "Gesetzeslücke bei Unfällen mit E-Scootern"

23) LG Münster, Urteil vom 09.03.2020-8 O 272/19

4. 프랑스 연금개혁 시도 속 법정 퇴직연령 상향 조정 공약

요 약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현행 법정 퇴직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또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그러나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

○ 2022년 3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현행 62세인 법정 퇴직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향후 프랑스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또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24)]

- 마크롱 대통령은 현행 62세인 법정 퇴직연령을 1년에 4개월씩 상향 조정하여 2032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프랑스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25)]
- 이전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법정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조정했을 때 퇴직연금[26)]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2년 상향 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프랑스 노동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영향을 줄 수 있음(〈표 3〉 참조)[27)]
  - 퇴직연령 상향 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금 펀드의 증가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 또한 3년만큼 상향 조정되어 70세가 될 가능성이 제기됨

〈표 3〉 프랑스 연금개혁

정권	법정 퇴직연령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르코지	60세→62세	65세→67세
마크롱(예상)	62세→65세	67세→70세

주: 1960년 이후 출생한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표시함
자료: Capital(2022. 3. 10)

〈그림 1〉 OECD 국가별 GDP 대비 연금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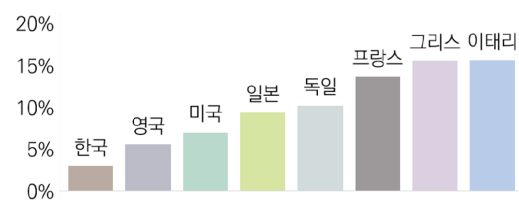

자료: OECD(2019)

24) Wall Street Journal(2022. 3. 17), "Macron Proposes Increasing France's Retirement Age to 65"
25) The Gurdianl(2022. 4. 12), "Macron hints at compromise over plan to raise retirement age"
26) 참고로 프랑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개인별로 노동을 시작한 지 42년이 되는 연령임
27) Capital(2022. 3. 10), "Report de l'âge de la retraite à 65 ans: gare aux effets cachés de la proposition d'Emmanuel Macron"

○ 프랑스는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면서도 퇴직은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을 기록하였으며(〈그림 1〉 참조)[28] 프랑스의 구조적 재정수지[29]는 6% 이상 적자임[30]
- 한편 프랑스는 현재 정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까지 반영한 평균 퇴직연령인 유효 퇴직연령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2021년 남성의 유효 퇴직연령은 프랑스가 60.4세, 스페인이 61세, 이탈리아가 62.3세, 독일이 63.1세, 영국이 63.7세, 미국이 64.9세, 한국이 65.7세, 일본이 68.2세임[31]
-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국민들의 노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프랑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려 함

○ 마크롱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프랑스의 연금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도 분산된 연금체계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직업에 따라 4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던 프랑스 퇴직연금 체계를 통합하려는 연금개혁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조합 등의 반대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함[32]
  - 현행 연금체계에서는 철도, 대중교통, 전기 및 가스 공무원과 육체노동을 요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조기퇴직과 높은 연금액이 보장되고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함
-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퇴직연금을 2022년 7월 1일의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여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함[33]

○ 마크롱 대통령은 4월 24일 결선에서 당선되었으나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논쟁 중임[34]

- 마크롱 대통령은 법정 퇴직연령을 65세가 아닌 64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개혁 계획 또한 2030년까지 완수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연기하겠다며 반대 여론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임

---

28) OECD(2019), "Pension Spending"(https://data.oecd.org/socialexp/pension-spending.html)

29) 구조적 재정수지란, 통합 재정 수지에서 경기 변동, 일시적인 세입·세출의 증가분과 같은 단기적 요인을 뺀,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측정을 말함

30) Financial Times(2021. 7. 7), "Macron looks at relaunch of pension reform plans"

31) OECD(2021. 12. 8), "Pensions at a Glance 2021"(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111939)

32) Financial Times(2019. 12. 18), "Unions turn up heat on Emmanuel Macron over pensions overhaul"

33) JDN(2022. 4. 27), "Réforme des retraites 2022: pourquoi elle fait déjà polémique"

34) France24(2022. 4. 12), "Macron softens on controversial pension reform as he heads into tight run-off"

-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을 치른 경쟁 후보 르펜은 법정 퇴직연령을 현행 62세로 유지하고 10대에 일을 시작한 경우 60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함
- 최근 프랑스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법정 퇴직연령 상향 조정에 반대했으며,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퇴직연금 재정 강화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 찬성함[35)]
  - 프랑스 민간산업 최대 노동조합인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측은 10대에 일을 시작하는 일부 직업의 경우 65세까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함

5.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핸드북 발표

요 약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실무 지침서를 발표함. 지침서는 기후변화 현황과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 시나리오 분석 방법, 주요 공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동 지침서를 기초로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됨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정보 공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TCFD 권고안[36)]의 일본 생명보험회사 맞춤형 버전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실무 핸드북을 마련하여 2022년 2월에 발표하였음**

- 주요 배경은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2019년에 TCFD 권고안을 지지하여 권고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계 내 통일된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실무를 지원하기 위함임

35) Reuters(2022. 4. 2), "French oppose Macron's proposed later retirement, poll shows as election looms"

36)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임. TCFD가 '17년에 발표한 권고안은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무적 영향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유도하는 것임. 주요 공개항목은 ①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② 전략: 장·중·단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경영·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③ 리스크관리: 기후리스크의 식별·평가·관리절차 및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④지표 및 목표치: 기후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관리지표, 목표치와 성과 등임

○ 일본 생명보험회사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핸드북은 총 101페이지 분량에 〈표 4〉과 같이 서론에 이어 제1장~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동 핸드북의 구성 내용을 참고하여 개별 회사들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재무정보를 공시할 가능성이 높음

〈표 4〉 일본 생명보험회사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핸드북 주요 구성

구분	목차
-	서론
제1장	기후변화 최근 현황
제2장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
제3장	생명보험회사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
제4장	생명보험회사의 시나리오 분석 실무
제5장	시나리오 분석 공시 사례
제6장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세계 동향
제7장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지침 및 도구 등 사례

자료: 生命保険協会(2022. 2. 18), "気候変動シナリオ分析ハンドブック"

○ 제1장 기후변화 최근 현황에서는 일본과 주요 국가의 홍수와 폭염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피해의 최근 현황,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 등을 서술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IPCC[37]의 평가, 기후관련 위험·기회 및 재무적 영향의 개념을 설명함

- IPCC는 기업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전환 위험(Transition risk)과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고, 기회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을 수치화해 재무적으로 분석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제2장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에서는 TCFD 권고안에서의 시나리오 분석 정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추진해야 하는 시나리오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TCFD 권고안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 권고안의 시나리오 분석의 체계, 시나리오 분석 기법(정량·정성적 분석), 시나리오 분석 접근 방법, 시나리오 분석 절차 등을 서술하고 있음

- TCFD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 시나리오 및 기타 적합한 2~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중장기적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37)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20년간의 연구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속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음

○ 제3장 생명보험회사의 시나리오 분석 개념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이유, 시나리오 분석 시 생명보험사업자 또는 기관투자자로서 구분 필요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각각의 리스크를 예시로 들고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기후변화 위험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업의 대표적 리스크 사례로 보험인수·전략적 운영·투자·시장·평판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우 매년 영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리스크는 생명보험사업자로서 태풍,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물리적 리스크)와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규제 강화 및 탄소세 도입(이행 리스크) 등이 있음
- 기관투자자의 경우 보험회사 소유자산(부동산 및 인적자원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비 증가와 잠재적 업무 정지의 가능성(물리적 리스크)과 자산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정책 변화(이행 리스크) 등이 있음

○ 제4장 생명보험회사의 시나리오 실무에서는 생명보험사업자와 기관투자자에 대해 각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업무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 절차는 '제1단계 지배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제2단계 기후관련 리스크 중요성 평가, 제3단계 시나리오 범위 특정과 정의, 제4단계 보험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5단계 고려할 준비 사항 특정, 제6단계 보고서 작성 및 공시'로 이루어짐

〈그림 2〉 생명보험회사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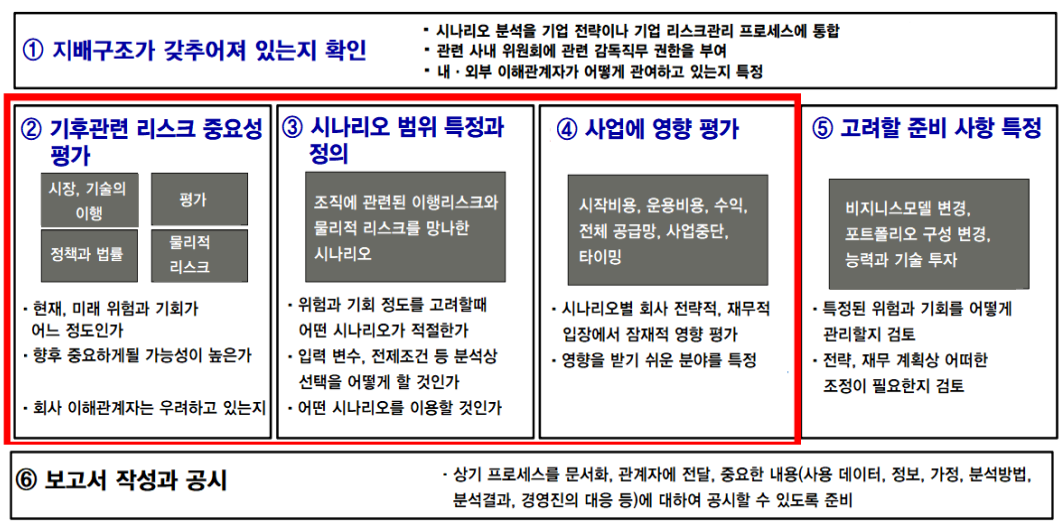

자료: 生命保険協会(2022. 2. 18), "気候変動シナリオ分析ハンドブック"

○ 제5장 시나리오 분석의 공시 사례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가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 보고서 등에서 생명보험회사 또는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따른 공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Allianz, AVIVA,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T&D홀딩스, 스미토모생명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제6장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세계 동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TCFD 권고안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산업별 저탄소경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약속한 기업 등의 권고 기준에 따른 일정별 배출량 이행 계획과 활동 등의 공개 항목과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의한 확인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재무정보를 기업 재무공시 절차 수준으로 공시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이외에도 PCAF[38]가 2020년에 마련한 온실가스 회계기준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에 발행한 연차보고서, UN PRI(유엔 책임투자 원칙), NGFS[39] 국제 가입회원 현황과 시나리오 개정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음

○ 마지막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지침 및 도구 등 사례에서는 TCFD의 가이던스 2.0 사례집(2020. 7), 일본 각 부처별 시나리오 분석 실무 가이드 등 시나리오 분석과 자산운용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시 국제기구가 제시한 도구 등의 참고 문헌을 열거하고 있음

38) 글로벌 금융기관 탄소배출량 측정 협의체(Partnership for Cabon Accounting Financials)

39)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Ⅱ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제3자 소송 금융산업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인플레이션 증가

요 약

최근 미국에서 '제3자 소송 금융(TPLF)'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현재 TPLF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최근 미국에서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 승소할 경우에 한해 일정한 대가를 받는 '제3자 소송 금융(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이하, 'TPLF'라 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주목받고 있음[1)]

- TPLF산업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해 2021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제3자 소송 자금 170억 달러 중 절반 이상(52%)이 미국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음
  -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송 건이 그 절차가 지연돼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감안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음
  - 10년 전까지 TPLF는 호주, 영국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였음
- TPLF는 각종 소송에 활용되고 있는데, 소송의 성격에 따라 크게 ① 개인 상해 소송(Personal injury), ② 대량 피해 소송(Mass tort), ③ 상업 소송(Commercial litigation)의 3가지로 나뉨
  - **(개인 상해 소송)** 개인이 상해 소송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의료 과실로 인한 사건이 이에 해당함
  - **(대량 피해 소송)** 의료기기 손상 등의 이유로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증권 사기,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청구 유형이 이에 속하며 주로 대표 원고를 맡는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차용자가 됨

1) ILR(2020. 1), "Selling More Lawsuits, Buying More Trouble"

- **(상업 소송)** 상업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로, 법인 원고 또는 로펌이 차용자가 됨

○ **본래 자금 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는 소송을 돕기 위해 도입된 TPLF는 최근 들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 소송의 내용보다는 승소 가능성 및 소송 규모에 기반해 투자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현재는 사회적 인플레이션[2]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최근 Swiss Re의 보고서[3]는, TPLF로 인해 일반 책임 및 상업용 자동차 소송에서 거액의 보험 청구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판결금이 발생한 소송 건 중 500만 달러 이상의 판결금을 받은 평결의 비율이 일반 책임의 경우 29%에서 37%로, 차량 과실 사건의 경우 22%에서 29%로 증가함(〈그림 1〉 참조)
  - 판결금 중위수 기준으로는 일반 책임 보상은 동 기간 820만 달러에서 1,030만 달러로, 차량 과실 사건은 61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로 증가함(〈그림 2〉 참조)
- 이와 같이 높은 보험 청구 비용은 보험료 증가와 보장 범위의 축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그림 1〉 판결금 500만 달러 이상 평결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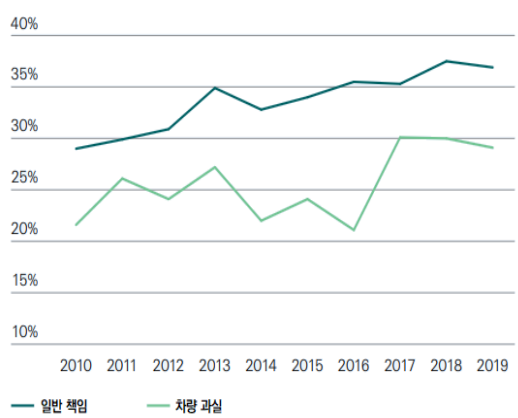

〈그림 2〉 판결금 중위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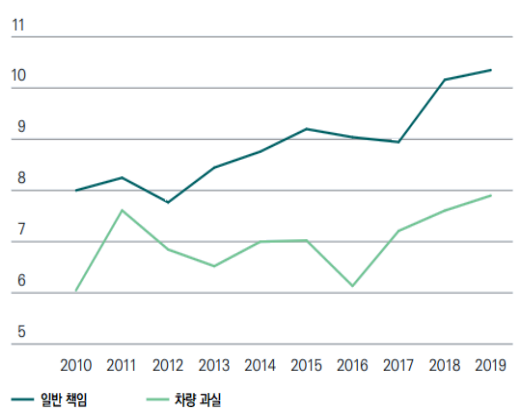

주: 표본은 100만 달러 이상 판결금이 발생한 소송 건임
자료: Swiss Re(2021. 12), "US litigation funding and social inflation"

2) 사회적 인플레이션(Social inflation)은 보험회사의 청구 비용이 정상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함

3) Swiss Re(2021. 12), "US litigation funding and social inflation"

○ 또한 사회적 인플레이션과 함께 윤리적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TPLF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TPLF의 개입으로 변호사, 자금 제공자, 원고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TPLF가 제시하는 자금 조달 계약 조건은 변호사에게 원고가 원하는 것과 다른 조건으로 피고와 합의할 동기를 제공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제3자 소송 자금은 절대적인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출'로 분류되지 않으며 소비자 대출에 대한 주(州) 금리 상한선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승소 시 TPLF 회사가 원고가 상환하는 금액에 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음
  - 일례로, 소송 자금 제공자들이 범죄자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124%의 높은 금리[4]를 부과해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언급된 적 있음[5]
- 현재 윤리적 문제는 변호사와 소송 자금 조달 회사 산업 협회(Litigation Funding Company industry association)에 의한 자체 규제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주(州) 단위에서 TPLF 협정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6]
  - 캘리포니아 주는 집단 소송의 경우 TPLF 협정의 자동 공개를 요구하는 판결을 최초로 내림
  - 현재 미국 지방법원 94개 중 25개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TPLF 약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2021년 3월, 상원에서 원고의 변호사가 TPLF 계약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자금 조달 투명성 법안(Litigation Funding Transparency Act; LFTA)이 발의된 상태임[7]

○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TPLF는 투자 수익률이 높고 회계상의 이점이 있는 등 투자자 및 소송의 원고 모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에는 연간 투자액이 약 3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TPLF 자금 조달 회사의 내부수익률(IRR)이 고위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 높으며, 자금 조달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어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표 1〉 참조)
  - TPLF 소송에 따른 자금 조달 회사의 IRR은 약 30%이며, 사모(PE), 벤처캐피털(VC) 및 S&P 500의 장기(15년) 수익률은 각각 13%, 13%, 10%임

4) 이와 비교하여 뉴욕 주(州)의 금리상한선은 25%임

5) NY Post(2018. 1. 2), "Inside the cottage industry that's fleecing NYC taxpayers"

6) UC Davis Law Review(2019), "Follow the Money? A Proposed Approach for Disclosure of Litigation Finance Agreements"

7)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840/cosponsors?searchResultViewType=expanded

- 또한, TPLF는 다른 금융시장과 비교적 관련성이 없어 자산배치 다양화의 이점이 있고 전통적인 대출기관들은 TPLF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은행 등의 전통적인 대출기관은 일반적으로 법적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자금을 조달하지 않음
- 기업의 경우, 소송에 투입된 돈은 자본화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소송을 통해 법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련 수익이 영업이익으로 처리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또는 일회성 항목으로 보고되어 기업평가 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TPLF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개인 상해 피해자의 경우, 법적·의료적 필요 자금 및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패소하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없어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 부담이 적음
  - 특히 사고로 인해 원고인 개인 상해 피해자가 실직하는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표 1〉 TPLF 소송 유형에 따른 연도별 평균 내부수익률(IRR)

(단위: %)

구분	2019년	20210년	2021년
개인 상해 소송	32.7	24.6	35.3
대량 피해 소송	29.5	26.5	29.9
상업 소송	21.2	25.5	26.0

자료: Swiss Re(2021. 12), "US litigation funding and social inflation"

2. 호주 생명보험 업계의 소비자 유전자 검사결과 이용에 관한 검토 내용

요 약

호주 생명보험 업계는 소비자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생명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동 조사결과 소비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상품의 보장한도가 특정 기준치 이하일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 호주 FSC(Financial Service Committee[8])는 2019년부터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소비자 유전자

8) 호주 FSC는 호주 금융서비스 부문 100여 개 기업을 대표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표준 규범을 설계하는 단체임. 회원사로는 펀드관리 사업자, 퇴직연금 수탁자, 생명보험회사, 금융자문사 네트워크 등이 있음

검사결과 이용에 관한 원칙인 '모라토리엄(Moratorium[9])'을 제정함[10]

- 소비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 시 맞춤형 의료를 처방받고 예방 조치를 취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이 같은 소비자 유전자 검사결과를 임의로 활용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 받기를 꺼려하고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함
- 이에 호주 FSC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가입 신청자의 유전자 검사결과 사용에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는 모라토리엄을 제정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모라토리엄의 주요 목적은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를 생명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고도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수준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모라토리엄은 호주 생명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정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 신청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11]**

- 모라토리엄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신청자가 이미 보유하거나 가입 예정인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금액 총합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이미 실행하거나 실행 예정인 유전자 검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표 2〉 호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신청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치

내용
• 보험가입 신청인의 사망 보장한도가 500,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 보험가입 신청인의 영구장애(Total permanent disability) 보장상품 보장한도가 500,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 보험가입 신청인의 외상 및 중대질환 보장상품에 대한 보장한도가 200,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 보험가입 신청인의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 급여지속(Salary continuation), 사업비용(Business expenses) 보장상품에 대한 보장한도 총액이 월 4,00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자료: 호주 FSC(2019. 6. 21), "FSC Standard No. 11: Moratorium on Genetic Tests in Life Insurance"

-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신청자에게 인수심사 절차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거나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없음
  - 소비자가 의학연구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라도 결과 수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유전자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9) 모라토리엄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활동을 합법적으로 중단(금지)하는 것이며 본고에서는 호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신청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사용하는데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동 용어를 이해할 수 있음

10) https://www.australiangenomics.org.au/financial-services-council-introduces-a-moratorium-on-genetic-tests-in-life-insurance/

11) https://fsc.org.au/resources-category/standard/1779-standard-11-moratorium-on-genetic-tests-in-life-insurance/file

- 보험가입 신청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생명보험 보장한도에 관계없이 유전자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생명보험회사는 신청인이 특정 질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신청자의 보장한도가 위에서 제시한 기준치 이하에 해당할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가 부정적일 경우라도 이를 인수심사에 이용할 수 없음
- 모라토리엄 원칙은 2019년 7월~2024년 6월까지 접수된 모든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며 호주 FSC는 생명보험 업계로 하여금 기존의 보험 신청서 양식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하도록 장려함

○ **호주 생명보험 업계는 2021년 모라토리엄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생명보험 가입 신청인의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결과를 수취함**

- 호주 생명보험 업계는 2021년 1월~6월까지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로부터 유전자 검사결과를 포함한 총 846개의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받음
- 이 같은 자료 수집을 통해 호주 FSC는 유전자 검사가 소비자의 생명보험 가입이나 보험의 보장 범위 및 다른 보험계약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함

○ **호주 FSC는 2022년 모라토리엄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유전자 검사결과가 소비자의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함**[12)]

- 분석 결과는 생명보험 보장한도가 모라토리엄 기준치 이하일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생명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 비록 보험가입 신청자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부정적이고 이 같은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보장한도가 모리토리엄의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음
- 호주 FSC는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실행하고서도 여전히 생명보험상품에 적정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유전자 관련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함

12) https://www.fsc.org.au/news/media-releases의 2/24 발표된 'New data show how the genetics moratorium for life insurance works for Australians' 자료 확인함

〈표 3〉 호주 FSC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보험소비자의 생명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

내용
• 유전자 검사결과가 보험가입 신청인의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이 없는 경우 77%(653건) • 보험가입 신청인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긍정적이고 생명보험 가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13%(111건) • 보험가입 신청인이 모라토리엄에서 규정한 보상한도 기준치 이상인 상품에 가입하고자 했고 유전자 검사결과가 부정적이었음에도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경우 6%(49건) • 보험가입 신청인이 모라토리엄에서 규정한 보상한도 기준치 이상인 상품에 가입하고자 했고 유전자 검사결과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24건) • 보험가입 신청인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공개되었지만 모라토리엄에서 규정한 보상한도 기준치 이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1%(9건) • 보험가입 신청인이 모라토리엄에서 규정한 보상한도 기준치 이하인 상품에 가입하고자 했고 (유전자 검사결과 공개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유전자 검사결과를 공개하였고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받은 경우 0%(0건)

자료: 호주 FSC(2022. 2. 24), "New data show how the genetics moratorium for life Insurance works for Australians"

○ 호주 FSC는 모라토리엄의 효과성을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임[13)]

- 모라토리엄 기준치의 적정성, 유전자 연구에 대한 소비자 참여도, 모라토리엄이 생명보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호주 FSC는 2024년 6월 30일 만기 예정인 모라토리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FSC는 생명보험 실행 규범(Life Insurance Code of Practice)에 모라토리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독립된 기구의 설립을 통해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향후 호주 FSC는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도우며, 필요 시 소비자가 유연한 방식으로 건강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13) https://www.fsc.org.au/news/media-releases의 2/24 발표된 'New data show how the genetics moratorium for life insurance works for Australians' 자료 확인함

3. 독일 생명보험산업의 일시납부 활성화 현황

요 약

독일에서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보험계약 만기 도래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납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일시납입 상품이 독일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동 상품의 신계약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독일에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만기가 도래한 계약이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안전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이 즉시연금 등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일시납부 생명보험상품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노년빈곤 예방 및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독일인은 전통적으로 저축을 선호해 왔지만 저금리 기조로 인해 예금 및 기타 금리연동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져 이를 상회하는 일시납부 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음[14)]
  - 2004년에는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거에 체결한 고금리 계약이 만기에 도래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을 다시 일시납부 보험료로 지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20년 일시납부 생명보험의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381억 유로로, 분할납부 수입보험료(58억 유로)보다 6.6배 높음[15)]
  - 2021년 독일 대형 보험회사의 일시납부 생명보험의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Allianz 93.44%, Generali 72.49%, R+V 80.15%로, 일시납부 신계약 비율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16)]
  -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위축이 예상되었지만 69개 보험회사 중 52개 사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했으며, 이는 일시납부 보험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17)18)]

14) Versicherungsbote(2021. 10. 5), "Potenziale im Einmalbeitragsgeschäft nutzen!"

15) GDV(2021), "Die deutsche Lebensversicherung in Zahlen 2021"

16) Versicherungsbote(2022. 4. 26), "Wer beim LV-Neugeschäft gegen Einmalbeitrag am meisten zulegte"

17) Versicherungsbote(2022. 4. 12), "Lebensversicherung: Die Neugeschäft-Könige gegen Einmalbeitrag"

18) 독일에는 2021년 기준 81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존재하지만 해당 결과는 기사가 발간된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생명보험회사의 결과를 제시함

〈그림 3〉 연간 생명보험 신계약 수입보험료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십 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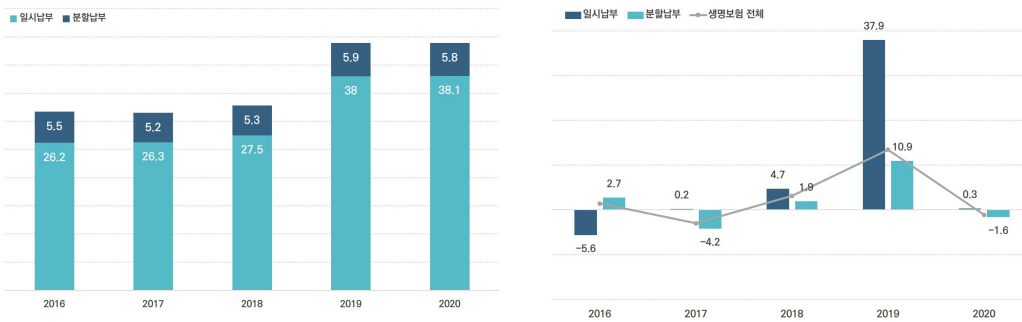

자료: GDV(2016~2021), "Die deutsche Lebensversicherung in Zahlen"

○ 일시납부 형식의 보험상품은 대표적으로 거치식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으로 분류되며 분할납부 형식의 연금보험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19)]

- 2020년 기준 일시납부 거치식연금보험 및 즉시연금보험의 평균수익률은 각각 1.2%, 2.16%로 분할납부 형식의 연금보험(2.32%)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 2년 거치 일시납부 연금보험의 경우 1.2%~2.5%, 10년 거치 연금보험의 경우 1.23%~2.5%의 수익률을 보임
  - 일시납부 즉시연금의 수익률은 최소 0.95%에서 최대 3.2%를 기록했으며 알리안츠의 경우 2.75%의 수익률을 보임에 따라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함

○ 일시납입 상품은 주로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계약자를 위한 상품인 이유로 인해 일시납입 상품이 견인하는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20)]

- 일시납입 생명보험의 경우 5만 유로 이상을 한 번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월 소득(2천~4천 유로) 중위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됨

○ 현재 독일 생명보험 산업에서는 일시납입 보험상품의 신계약 규모를 축소시켜 전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는 사례와, 동 상품의 신계약 규모 확대를 통해 수입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21)]

19) Assekurata(2021. 2. 15), "Einmalbeiträge – berechtigter Wachstumstreiber im Lebensversicherungsgeschäft?"
20) Versicherungsbote(2021. 12. 15), "Lebensversicherung: Die Neugeschäft-Champions gegen Einmalbeitrag"
21) Versicherungsbote(2022. 4. 8), "Lebensversicherung: Allianz und R+V fahren Neugeschäft gegen Einmalbeitrag zurück"

- 대형 보험회사 알리안츠 및 R+V 생명보험의 2021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일시납입 보험의 신계약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임
  - 2021년 알리안츠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이는 일시납입 보험의 신계약 규모를 25% 이상(2020년: 약 174억 유로, 2021년: 약 128억 유로) 축소시킨 것에 기인함
  - R+V 생명보험 또한 전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일시납입 보험상품의 신계약 수입보험료의 규모는 2020년 약 43억 6천 유로에서 2021년 약 41억 2천 유로로 축소함
- 그러나 이와 반대로 Generali, Debeka 등의 보험회사는 일시납입 보험상품의 신계약 규모의 확장을 통해 2021년 수입보험료를 전년 대비 상승시킨 경우도 존재함
  - Generali 생명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2020년 약 50억 유로에서 2021년 약 60억 유로로 상승하였으며, 일시납입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 또한 11억 6천만 유로에서 14억 유로로 늘어남
  - Debeka 또한 2020년 수입보험료가 약 38억 유로에서 2021년 40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시납입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는 약 4억 유로에서 6억 유로로 상승함

4. 영국의 보험료 신용결제를 활용한 '유사 상호회사' 인슈어테크 LAKA 사례

요 약

LAKA는 상호회사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 보험 인슈어테크 기업임. 영국에서 상호회사가 자본력의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LAKA와 같은 디지털 상호회사가 이 공백을 채우고 향후 보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제기됨

○ **LAKA는 조직형태가 상호회사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 보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보험계약자가 매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후불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2)]

- 매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동일한 풀(Pool) 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결정되며 해당 풀의 개별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자전거 가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 고가의 자전거를 가진 가입자일수록 고가의 보험료를 분담함

22) LAKA(2019), "Time to re-think insurance; aloha credit risk"

- 당월에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가 없으면 익월에 납입할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을 회원들이 공유하는 상호회사와 유사하며, 가입자들로 하여금 안전에 주의할 유인을 제공함

○ **LAKA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후불납입 연체와 관련한 신용 리스크 측정법을 개발하고 SNS 계정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용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음[23]**

- LAKA는 비전통적 데이터와 AI 리스크 모델링을 활용해 가입자들의 연체율을 예측하는 신용 리스크 측정법을 개발하였음
- 현재 LAKA의 가입자 중 3분의 2가 페이스북, Strava[24] 등 SNS 계정을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LAKA에 따르면 SNS 계정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연체율이 현저히 낮음
  - SNS에서는 가입자들의 정보 노출도가 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후불 납입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LAKA는 현재 영국에서 개인 외에도 다수의 배달업체,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전거에서 전기자동차로, 영국에서 유럽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임[25]**

- 매월 갱신되는 자유로운 형태의 보험계약에도 불구하고 LAKA의 고객 이탈률은 1% 미만임
- LAKA는 향후 그린 모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자전거에서 전기자동차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영국 정부가 런던, 옥스퍼드 등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면서 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LAKA의 한 해 매출은 215% 성장함[26]
- 최근에 LAKA는 네덜란드 보안업체 AXA Security의 기술을 활용한 전기자전거 도난 보장 상품을 네덜란드 및 벨기에에서 출시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안에 프랑스, 독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
  - 동 상품은 스마트폰에 연결된 전기자전거의 GPS 위치정보를 활용해 자전거 도난 시 경보를 발송하고, 출동된 전문 인력이 자전거를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새 자전거를 지급하는 상품임[27]
  - LAKA는 2022년 1월 유치한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2022년 상반기 안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향후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 밝힘[28]

---

23) LAKA(2019)

24) Strava는 사이클링이나 러닝 시에 이용자의 GPS 데이터를 추적하여 SNS 기능에 통합하는 특징을 지님

25) EU-Startups(2022. 1. 26), "UK-based Laka secures €10.6 million to build European e-mobility insurtech solution"

26) https://www.seedrs.com/laka?utm_source=wordpress&utm_medium=blog&utm_campaign=laka_meetthefounder

27) Crowdfund Insider(2022. 2. 17), "Stop the Bike Theft! Insurtech Laka Joins with Decathlon to Battle Bike Crime with Tech"

28) Insurance Times(2022. 1. 27), "Laka raises $12m to build e-mobility insurtech in Europe"

○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호회사가 자본력의 부족으로 영국에서 몰락해가는 가운데, LAKA와 같은 '디지털 상호회사'가 이 공백을 채우고 보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제기됨

- 최근 영국에서는 논란이 된 상호회사 LV의 매각 시도가 무산될 만큼 상호회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상호회사들은 자본 확충의 어려움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음[29)]
  - 영국에서는 상호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매각되면서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50%에서 현재 약 10% 수준으로 감소함[30)]
- LAKA와 같은 '디지털 상호회사[31)]'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상호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사업성을 지니는 혁신적 보험의 형태로 기대되고 있음[32)]

5. 중국 기업 사이버보험의 시장동향[33)]

요 약

2021년 중국 기업 사이버보험 시장은 전년 대비 3.2배 증가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향후 중국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이버보험상품·서비스 혁신,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지정, 세금공제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함

○ 2021년 중국 기업 사이버보험 시장의 총 보험료 규모는 7,080만 위안(약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배 증가하였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 2020년 기준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7억 달러(3조 4,452억 원)로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5%임
- 현재 중국에서 50개가 넘는 기업 사이버보험상품은 판매되고 있는데 보상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사이버공격으로 당사자가 직접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 20여 개로 가장 많음
  - 또한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은 10여 개에 달하였으며, 나머지 상품은 기업의 재산

29) 이연지(2022. 2. 10), 「영국 LV의 탈상호화 움직임과 계약자 보호 논란」, 『해외보험동향』, 2021년 겨울호, 보험연구원

30) InsuranceERM(2021. 11. 26), "FCA has not done enough to tackle LV= demutualisation, MPs told"

31) Rouleur(2021. 11. 17), "For the collective good: How LAKA are shaking up bike insurance"

32) InsuranceERM(2021. 11. 16), "LV's demutualisation: what kind of capital(ism) do you want?"

33) 본문은 중국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中国国家工业信息安全发展研究中心)의 "我国网络安全保险产业发展白皮书"의 내용에서 발췌함

손실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모두 보상하는 종합보험상품과 위기 대응 비용 등 특정 위험을 보상하는 상품임

- 중국에서 기업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소수 외국 손해보험회사에서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 중국태평안손해보험회사, 중국인수손해보험회사 등 중국 본토의 대형 손해보험회사로까지 확대됨
  - 2018년 이전에는 Zurich General Insurance, The Tokio Marine & Nichido, Mitsui Sumitomo Insurance 등 외국 보험회사들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기업 사이버보험을 판매하였음

〈표 4〉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업 사이버보험의 보상 내용

보상 내용		세부 내용
가입자의 손실	영업중단 손실	피보험자가 랜섬웨어나 기타 방식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입은 손실(순이익 기준)
	랜섬웨어 손실	피보험자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핵심 업무시스템이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해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데이터 수리비	피보험자가 사이버 공격으로 핵심 데이터가 분실·훼손·삭제되어 지급하는 데이터 복원 비용
	피싱 등 사기 손실	피보험자가 피싱 공격으로 사기범 계좌로 이체할 때 발생하는 손실
	컴퓨터 수리 또는 교체 비용	피보험자가 랜섬웨어 공격이나 기타 사이버사고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수리 또는 교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
	홍보비	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사고로 피보험자의 악화된 평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피보험자가 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사고로 고객의 소송에 대응할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정보 유출 배상책임	기업의 업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배상책임
	사이버공격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해커 공격으로 고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부담해야 하는 법정 배상책임
	미디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회사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때 부담해야 하는 법정 배상책임
	외주업체 데이터·정보 유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해커 공격으로 정보를 유출할 때 피보험자가 고객정보 유출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배상책임
기타	위기 대응 비용	피보험자가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한 후 제3자 서비스업체를 사용해 보안사고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상담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받는 상담으로 발생하는 비용
	사이버보안 등급 평가비	사이버보안 사고로 사이버보안 등급 인정을 다시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자료: 중국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 "我国网络安全保险产业发展白皮书"

○ 그동안 중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 장애 요인으로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필요에 대한 인식 부족, 합리적인 가격과 보상 내용을 갖춘 사이버보험상품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사이버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부족, 사이버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국 기업들은 사이버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국에서는 사이버사고에 관한 경험데이터의 부족으로 중국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사이버보험은 가격과 보상 내용에서 중국 기업의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다수 중국 보험회사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이버 위험을 사이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21년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이버보안 중요성 대두로 중국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을 사이버위험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 2021년 6월 중국 정부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관한 규정인 『데이터안전법』(이하, '데이터법'이라 함)을 발표해 데이터 처리 부서와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활동 정지 등과 같은 처벌을 명시함
  - '데이터법'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안전과 발전, 데이터 안전 제도, 데이터 보호의무, 정부업무의 데이터 안전과 개방,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함
- 2021년 7월 중국 정부는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핵심 정보인프라시설 안전 보호 조례』(이하, '핵심 정보인프라조례'라 함)를 발표하여 핵심 정보인프라시설과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함
  - '핵심 정보인프라조례'는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인정,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보장과 촉진, 법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2021년 8월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호법'이라 함)을 발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음
  - '개호법'은 개인정보 처리규칙, 개인정보의 국경 외 제공 규칙,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법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중국 정부가 기업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이버보안 등급을 제고하고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전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증가함
  - 현재 중국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험의 이전을 위한 방안으로 IT, 금융, 에너지 등의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표 5〉 중국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새로운 법률 및 규정

법률·규제 명칭	세부 내용
『데이터안전법』	• 데이터 안전과 발전: 데이터거래 관리제도 개선 등 • 데이터 안전 제도: 데이터 분류와 등급보호제도, 데이터 보안 위험 통제제도, 데이터 보안 응급 조치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보호 의무: 중요 데이터 처리활동 위험에 대한 감시 강화 등 • 정부업무의 데이터 안전과 개방: 데이터 보안 관리제도 개선, 정부 업무의 정보 공개 등 • 법적 책임: 데이터 처리 활동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처벌 등
『핵심 정보인프라시설 안전 보호조례』	•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인정: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 정부업무 등 업종과 분야 •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사이버보안 보호제도 및 책임제 수립, 전담안전관리부서 설립 등 •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보장과 촉진: 감독당국의 안전계획 제정, 정보공유제도와 감시 경보제도 수립 등 • 법적 책임: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의 운영자, 감독당국의 담당자에 대한 처벌 등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규칙: 민간 개인정보 처리규칙,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규칙 • 개인정보의 국경 외 제공 규칙: 허용 범위, 준수사항, 금지대상 •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알 권리와 결정권, 제소권 •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자 임명, 영향평가와 처리상황 저장 등 • 법적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기업의 입증책임 요구

○ 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사이버보험상품과 서비스 혁신,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지정, 세금공제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상품과 서비스 혁신: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보장 + 위험감시 + 사후서비스”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을 개발해야 하며,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전사적인 사이버위험 관리 서비스 + 높은 보상금액”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을 개발해야 함
- 의무 가입 대상 지정: 중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정보인프라시설에 속하는 업종을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함
- 세금공제 혜택 제공: 중소형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6. 중국 양로산업 동향

요 약

중국 양로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양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 2월 『14차 5개년 국가 양로산업 발전 및 양로 서비스 체계 규획』을 발표함. 동 규획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관련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5가지 발전목표를 명시함

○ **양로산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크게 노인용품, 양로 서비스, 양로 부동산, 양로 금융 등 4개 분야로 구분됨**

- 노인용품 산업은 의료기기(보청기, 휠체어, 요양 침대 등), 전자제품, 완구, 장례용품 사업으로 구성됨
- 양로 서비스는 양로·간호 도우미, 의료·간호 서비스, 관광·법률 서비스 등이 해당됨
- 양로 부동산은 양로시설, 양로 복합단지, 건강요양 리조트 등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산업을 의미함
- 양로 금융은 장기요양보험, 양로보험, 고령자 의료보험 등 보험상품과 노인 저축상품 등 금융상품임

○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양로산업 규모는 2016년 약 2조 9,000억 위안(약 555조 원)에서 2021년 약 5조 9,000억 위안(약 1,129조 원) 규모로 성장함**

- 2021년 중국 노인인구의 주요 소비는 의료비(31.3%), 건강검진(9.6%) 등 의료건강 지출이 40.9%를 기록했고, 식품보건(23.5%), 의류(15.6%) 등 일상생활 소비가 39.1%, 기타소비는 20.0%를 기록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양로산업의 융자금액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1,976억 위안(약 37조 원)으로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스마트 양로설비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영향임

〈그림 4〉 2016~2020년
중국 양로산업 시장규모 추이

〈그림 5〉 2021년
중국 노인인구 주요 소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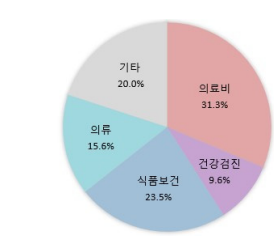

〈그림 6〉 2016~2020년
중국 양로산업 융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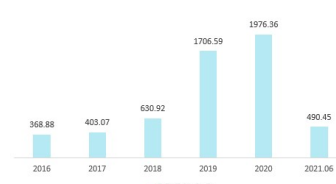

자료: iiMedia Research(2021)

○ 중국 정부는 양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가지 규획 배경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2022년 2월 『14차 5개년 국가 양로산업 발전 및 양로 서비스 체계 규획(이하, '14.5규획'이라 함)』을 발표함[34]

- 14.5규획 배경은 ① 고령 정책과 법규 체계의 지속적인 완비, ② 다원화된 사회 보장 강화, ③ 양로 서비스 체계 개선, ④ 노인사회 통합 가속화, ⑤ 고령사업과 산업의 가속화 발전임

  ① 노인 관련 규제 정책을 체계화하고, 노인 권익 증진 제도 및 우대 정책을 세분화함으로써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기본 사회보험의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업 퇴직자의 양로보험 대우 및 도농주민 기초 양로금 수준의 향상으로 상업양로보험, 상업건강보험의 가입 장려가 요구됨

  ③ 중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2%(약 2억 56만 명)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로시설의 병상 확보가 필요함

  ④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2020년 77.9세로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기층의료위생기구(基层医疗卫生机构)[35]에서 무료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⑤ 고령자들에게 식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 가공 공장, 지역사회 식당, 이동식 밥차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배달 플랫폼의 음식 배달 참여 확대 및 급식기구의 음식물 안전 책임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노인 식사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동 14.5규획은 규획기간(2021~2025년) 동안 인구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노인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여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14.5규획의 발전목표는 ① 양로 서비스 공급 확대, ② 노인 건강 지지체계 건전화, ③ 낙후된 서비스의 혁신과 융합, ④ 요소 보장 능력 강화, ⑤ 노후에 살기 적합한 사회 환경 조성임

  ① 도시와 농촌을 결합하여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고품질의 양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가정 내 간호 능력을 확대할 예정임

  ② 노인 건강 서비스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가정병상, 순회진료 등 재택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임

  ③ 교육 훈련, 문화 관광, 헬스 레저, 금융 지원 등 노인용품 산업을 확대하고, 노인용품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고령 인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용품을 개발할 예정임

  ④ 양로산업 종사자 규모 및 능력 강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감독 완비 및 장기요양 보험 제도 발전을 통해 요양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예정임

  ⑤ 고령자들을 위한 목욕도움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범을 공식화하고, 목욕 보조기기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목욕 보조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험 가입을 장려할 예정임

---

34)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2/21/content_5674844.htm?msclkid=dee8d672d02d11eca2ab7474071edc77

35) 중국 의료위생기구는 병원(医院), 기층의료위생기구(基层医疗卫生机构), 전문공공위생기구(专业公共卫生机构), 기타위생기구(其他卫生机构) 4종류로 분류됨. 기층의료위생기구는 향진위생원(지방 소도시 보건소), 문진부, 진료소, 촌위생실 등으로 구성됨

〈표 6〉 14차 5개년 국가 고령사업 발전과 양로 서비스 체계 주요 목표

지표	2025년 목표
1. 양로 서비스 병상 수	900만 개 이상
2. 장애 노인의 월간 방문율	100%
3. 신축 도시와 거주지역의 양로 서비스 시설 건설 목표 달성률	100%
4. 양로기구의 요양 침대 비율	55%
5. 2급 이상 종합병원 노인의학과의 비율	60% 이상
6. 대학, 직업대학에서 양로 서비스 전공 학생 모집 규모	뚜렷한 증가
7. 노인 1,000명당 사회복지사 수	1인 이상 유지
8. 노인대학 활성화	각 현(시·구·기) 최소 1개
9. 경로행사 활성화	각 현(시·구·기) 매년 1회 개최

자료: 国务院(2022)

○ **중국 은보감회는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운영을 정식 승인하였으며, 이는 전문적인 양로보험 경영기관으로서 기존의 양로보험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36]

- 2022년 3월 중국 은보감회는 10번째 양로보험 기업인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운영을 정식 승인함
  - 국민양로보험공사는 17개 기업이 공동 설립했고, 이 중 10개는 은행 산하의 자산관리 자회사임
  - 등록 자본금은 111억 5,000만 위안(약 2조 원)이며, 양로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태강생명보험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2억 위안임
-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사업 범위는 연금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재보험 업무, 양로 보장을 목적으로 위탁한 위안화, 외화 자금의 위탁 관리 등을 포함함
- 전문가들은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설립에 따라 보험상품과 서비스 다양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양로보험 시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양로보험 제도는 3층 구조의 양로보험을 규범화하고 있으며, ① 기본 양로보험, ② 기업·직업연금, ③ 개인저축형 양로보험과 상업양로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36) http://www.zqrb.cn/jrjg/insurance/2022-03-23/A1647963378762.html

7. 일본 보험그룹의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확산 동향

요 약

일본 보험회사들은 MZ세대 수요에 대응하고 전통적 사업모델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앱(App) 채널을 이용하여 소액·생활밀착형 특화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 주로 대형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2018년부터 12개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인수·신설함

○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디지털기술 발전, MZ세대 등장, 새로운 수요 확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소액단기보험업은 생존과 재보험을 제외한 소액단기보험만을 인수 및 취급하는 자본금 1천만 엔의 소규모 보험사업으로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생명·손해보험상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임

- 일본에서 근거법 없이 운영되어 온 다수 공제회사에게 법률상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보험업법에서 소액단기보험업제도가 도입됨
- 소액단기보험은 사망(300만 엔), 상해(600만 엔), 의료(80만 엔), 손해(1천만 엔) 보험상품의 1인당 가입금액이 1천만 엔 이하의 소액상품과 1~2년(생명·손해보험)의 단기성 상품으로 제한됨

○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공제회사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전환과 보험산업과 타 산업의 진출 확산 등에 따라 회사 수가 2010년 66개에서 2021년 112개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보유계약 수와 수입보험료 규모도 〈표 7〉과 같이 2010년 각각 425만 건, 466억 엔에서 2021년 각각 995만 건, 1,226억 엔으로 증가하여 10여 년 만에 각각 2.3배, 2.6배 성장함
-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비중(2021년 9월 말)은 가재보험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반려동물보험 7%, 생명·의료보험 13%, 비용·기타보험 7%를 차지함

〈표 7〉 일본 소액단기보험업 회사 및 실적 추이

(단위: 개, 만 건, 억 엔)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회사 수	66	85	89	97	101	103	110	112
보유계약 수	425	638	687	753	831	883	957	995
수입보험료	466	726	814	923	1,032	1,074	1,178	1,226[1)]

주: 1) 추정 수입보험료 규모임

자료: 日本少額短期保険協会, 少額短期保険業界の決算概況について(각 연도)

○ 소액단기보험회사들은 소액·단기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최근 단순·간편·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통 보험회사와 차별화하고 있음

- 최근 판매 주요 상품은 고독사보험, 장례보험, 결혼취소보험, 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주계약형 간병보험과 치매보험, 세입자 임차보험, 당뇨병환자보험, 지적장애인보험, 콘서트·레스토랑 등 서비스 예약취소 비용보험 등 전통 보험회사가 주로 판매하지 않는 생활밀착형 틈새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에는 타 산업의 적극적인 사업 진출 영향과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개발의 자율성·민첩성 등의 사업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인수 또는 신설이 확산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중에서는 〈표 8〉과 같이 스미토모생명, AFLAC생명, 다이이치생명, 니혼생명이 각각 2019~2021년에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 중에서는 취리히그룹, 손보재팬그룹, 다이도화재, 토쿄해상그룹이, 종합금융보험회사 중에서는 Rakuten그룹과 SBI그룹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표 8〉 일본 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현황

구분	모 회사명	진출 방식	구분	모 회사명	진출 방식
2018. 3	Rakuten그룹	인수	2021. 2	AFLAC생명	신설
2018. 10	취리히그룹	인수	2021. 3	다이도화재	신설
2019. 3	손보재팬그룹	신설	2021. 4	다이이치생명	신설
2019. 6	SBI그룹	인수	2021. 4	니혼생명	신설
2019. 8	스미토모생명	인수	2022. 2	토쿄해상	신설(준비 중)
2020. 6	SBI그룹	인수	-		

자료: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2. 2. 8), "少額短期保険業界"를 기초로 작성함

○ 일본 내 5위 생명보험그룹인 스미토모생명은 소비자 니즈 다양화·세분화에 따른 틈새 보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액단기보험회사를 2019년에 인수함[37)]

- 동 회사는 인터넷과 통신 판매채널, 보험대리점 판매 등에서 소액 의료보험, 가재보험, 고독사보험, 불임치료보장, 장례보험, 계약이행비용보험, 책임보험 등의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스미토모생명은 향후 동 회사를 그룹 내 틈새상품 전문의 다이렉트 전문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임

○ 3위 생명보험그룹인 다이이치생명은 MZ세대 수요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설하고 2021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함[38)]

- 주로 MZ세대 대상으로 간단한 상품, 간편한 가입절차,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회사의 모토로 삼아

37) 住友生命 News Release(2019. 8. 21)

38) 第一生命 News Release(2021. 4. 7)

스마트폰 App에서 모든 보험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음

-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스마트폰 App에서 코로나19 입원비 보장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LINE 등 빅테크기업과 오픈마켓을 통하여 각 마켓 특성과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 **1위 생명보험그룹인 니혼생명은 스마트폰 등에서 생명·손해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다이렉트 영업 전문 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 준비단을 2021년 4월 30일 출범시킴**[39]

- 신설의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니혼생명은 그동안 전통 판매채널 유지를 위해 다이렉트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었으나 경쟁사인 다이이치생명의 다이렉트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MZ세대의 디지털 수요와 소액, 심플한 보장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 신설될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소액단기 생명보험은 물론 니혼생명이 취급할 수 없는 손해보험분야의 상품도 판매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유통·커뮤니티 기업 등과 협업하여 판매할 계획임

○ **3위 손해보험그룹인 손보재팬은 디지털 보험수요에 대응하고. 그룹사 및 빅테크기업과 연계 영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3월에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설함**[40]

- 동 회사는 주로 MZ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분실보험과 여행취소보험 등과 같이 스마트폰 App에서 '단순한 상품, 신속·간편한 청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품 판매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2019년 12월부터는 LINE과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LINE 보험' App에서 가입할 수 있는 '리워드형 상해안심보험과 골프 홀인원 안심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음[41]
- 향후 손보재팬은 그룹 내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등을 위탁 판매에 활용하는 등 그룹의 시너지 강화를 통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그룹의 대표적인 App판매 전문회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임

○ **한편, 중소형 손해회사인 다이도화재는 오키나와에 본사를 둔 지역 보험회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App을 통해 전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2021년 3월에 신설함**[42]

- 이를 위해 동 회사는 오키나와 지역의 부동산중개 네트워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App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현재 주요 판매상품은 부동산 관련 가재도구와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주택 임차인 종합보험이지만, 향후 App과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상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임

---

39) 日本生命 News Release(2021. 3. 19)

40) 損害保険ジャパン News Release(2019. 3. 6)

41)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1956.000001594.html

42) 大同火災 News Release(2021. 3. 18)

○ 1위 손해보험그룹인 토쿄해상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설립 준비회사를 2022년 2월에 출범하고, 금융당국의 등록절차를 거쳐 2022년 중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임[43]

-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단순한 상품내용과 편리하고 신속한 가입 및 청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액상품 판매를 추구하고, 대규모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기업과 인터넷쇼핑몰 기업과 협업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이에 앞서 동 회사는 부동산보험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부동산중개사 채널에서 주택임차인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미래아소액단기보험회사와 관서지역에서 부동산보험을 판매하는 West소액단기보험회사를 각각 2008년과 2014년에 인수한 바 있음
- 현재 부동산보험시장에서 대형과 소형 부동산을 구분하여 토쿄해상과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조정을 통해 상기의 두 개의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쇼핑·종합금융보험회사인 Rakuten그룹[44]은 펫용품 플랫폼과 연계 영업을 위하여 2018년 3월에 기존의 펫전문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인수하였음

- 동 회사는 2003년 반려동물공제로 시작 후 2008년에 소액단기보험업으로 전환한 펫보험 전문회사로 2018년 Rakuten펫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그룹 내 보험지주회사 자회사로 소속되어 그룹 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을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그룹 시너지를 제고하고 있음

○ 종합금융보험회사인 SBI그룹[45]은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금융그룹의 상품 라인업 확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하여 2013~2020년 동안 5개의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인수하였음

- 2019년과 2020년에는 PRISM 소액단기보험과 SBI JOGUCHI SAFETY 소액단기보험을 인수하여 펫보험과 임대주택 종합보험 시장에 참여하였음
- 인수의 주요 배경은 그룹사가 보유한 고객기반을 활용하고,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그룹 판매채널에 다양한 생활형 소액단기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상품 라인업 확대와 그룹 내 금융·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을 상호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그룹 시너지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동 회사는 5개의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진발생 및 코로나19 등 대규모 보험사고 발생 시 손실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46]

43)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News Release(2022. 2. 1)

44) 일본 최대의 인터넷쇼핑몰과 은행,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70개사가 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45) 일본 최대의 온라인 금융과 바이오·제약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70개 이상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또한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보험지주회사 산하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다수의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46) SBIインシュアランスグループ(2020), "SBIインシュアランスグループの現状"

특 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독일편

1. 독일의 고령화 현상

○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수는 1991년 약 1,200만 명(15%)에서 2020년 1,830만 명(22%)으로 증가함[1)]

- 독일은 일본, 이탈리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로, 이미 2007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함[2)]
- 특히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1991년 85세 이상 인구 수는 120만 명, 2020년 250만 명을 기록하여 동 그룹의 증가폭(52%)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폭 보다 크게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20~65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6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는 노인부양비는 1998~2006년 동안 25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38명을 기록함
  - 2000년대 초반까지 동·서독의 노인부양비율은 비슷했으나 통일 이후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가 서독으로 이주함에 따라 동·서독 간 비율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추세임

〈그림 1〉 독일 연령대별 인구비율 및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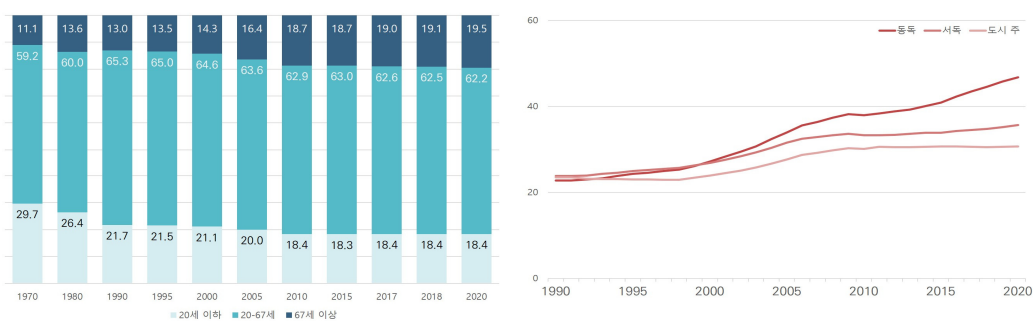

자료: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BPB)(2019), "Bevölkerungsentwicklung und Altersstruktur";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2022), "Entwicklung des Altenquotienten"

1)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2021), "Ältere Menschen"

2) Statista(2021), "Share of the population in Germany aged 65 years and older from 1991 to 2020"

○ 독일 인구의 평균수명은 2018/2020 기준 남성 78.64세, 여성 83.4세로 완만한 증가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 인구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1871/1881년 65세 남성의 평균수명은 9.6년, 여성은 10년이었으나, 2018/2020년 남성은 17.9년, 여성은 21.1년으로 약 두 배 증가함
  - 2020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약 3,500여 명이 증가한 2만여 명을 기록하여 인구의 약 0.24%를 차지함
  - 의료 및 위생 체계의 발달과 복지 증대로 인해 앞으로 2060년까지 독일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4~8년, 여성의 경우 3~6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2019년과 대비하여 2018/2020년 기대수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우 작은 폭(남아 +0.01, 여아 +0.04)으로 상승했으며, 2020년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높은 사망률을 보임[3)]
- 독일은 이미 1972년부터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높은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했으며, 출생률·기대수명 및 이민이 지금과 같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면 총 인구 수는 향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4)]

〈그림 2〉 독일 인구의 기대수명 및 사망자-출생자 변화 추이

(단위: 세(연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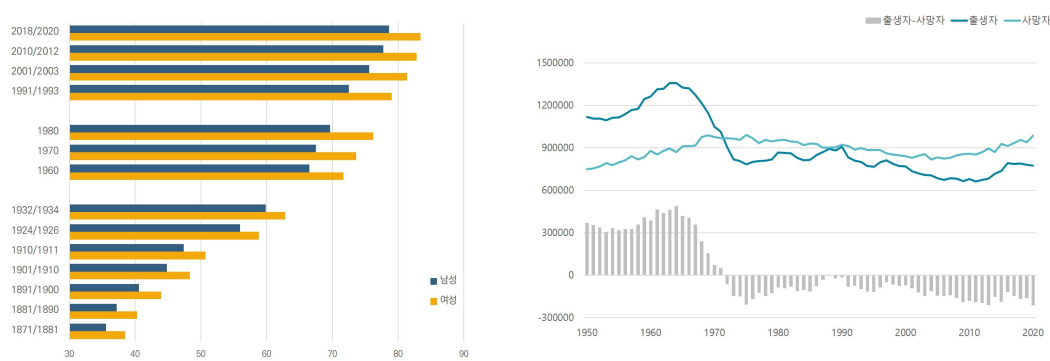

자료: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2021); 인구통계포털(Demografieportal)(2021)

3)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Lebenserwartung in Deutschland nahezu unverändert

4) Demografie Portal, Natürliche Bevölkerungsentwicklung, 1950-2020

2. 독일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5)]

○ 독일은 정부 지원을 통해 ①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② 장기요양보험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음

가. 사적연금 기능 강화

○ 독일 정부는 2001년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의 보험료율 상승을 통제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으로 사적연금(3층)[6)] 가입을 유인하는 공사연계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Rente)[7)]'을 도입함

- 2001년 당시 집권 정당인 적녹연정(사민당·녹색당)은 인구고령화로 법정연금의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저지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을 단행함
  - 2022년 현재 월 개인 소득의 18.6%를 차지하는 독일 법정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 이전 1998년 20.3%에 달했음[8)]
  -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7%로 낮추고, 2004년에 후속조치로서 지속가능성계수(Nachhaltigkeitsfaktor)를 도입하여 연금수령자와 기여자의 수를 고려하여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함
- 이에 독일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낮아진 공적연금 수령액을 보완하기 위해 수당, 세금공제 혜택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적연금 상품 가입을 유인하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함[9)]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리스터 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의 4%를 보험료로 납부한다면 정부는 1년에 기본 수당 175유로를 지급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 한 명당 300유로를 지급함[10)]
  - 저소득층의 경우 최소 납입액이 연간 60유로로, 리스터연금은 특히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5) 독일에는 '① 경제성장 잠재력 강화 ② 사회결속력 증대 ③ 평등한 생활요건 촉진 ④ 국가의 행동력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인구고령화 대응책이 존재해왔음(자료: 독일 연방정부,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Jedes Alter zählt").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대해 주로 소개할 예정임

6)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총 3층으로 구성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

7) 연금 상품의 이름 '리스터'는 당시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발터 리스터(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함

8) Sozialpolitik-aktuell.de(2021), "Beitragssätze zur Rentenversicherung 1955-2021 und bis 2030"

9)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보조금 혹은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10) 리스터연금의, 보조금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의 인상이 있었으며, 자녀수당의 경우 '08년 이전 출생 자녀에게 대해 185유로를 지급함

○ 리스터연금 상품의 종류는 크게 연금보험(Versicherungsvertrag) 저축계획(Banksparplan), 투자기금(Investmentfonds), 주택연금(Wohn-Riester) 4가지로 구분됨

-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가입비율(65%)을 차지하는 연금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리스터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종신연금을 수급하는 형태임
- 저축계획은 일반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기준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받지만,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
- 투자기금은 사적연금의 한 형태로, 보험금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임
- 주택연금은 저축과 대출이 혼합된 계약의 형태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저축한도[11]의 일정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할 시 남은 저축한도의 차액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임

○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2001년 이래로 가입자 수는 140만 명에서 1,62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신규가입자 수의 상승세는 둔화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 리스터연금 상품 유형에 따른 가입자 수 추이

(단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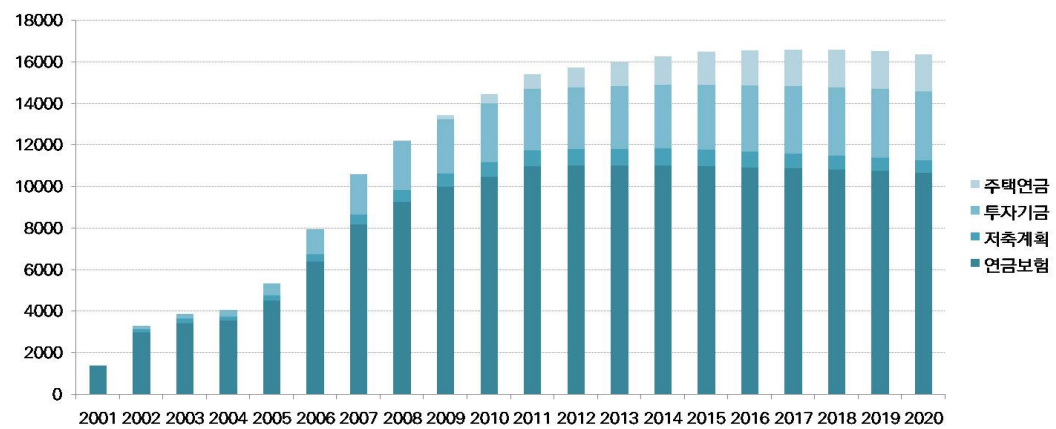

자료: BMAS(2021), "Statistik zur privaten Altersvorsorge(Riester-Rente)"

○ 그러나 리스터연금은 ①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률, ② 예상을 하회하는 급여수준, ③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12]

-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리스터연금 가입률(13%)이 고소득층의 가입률(32%)보다 확연히 낮아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13]

11) 주택저축한도(Bausparsumme)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약마다 최소 및 최고 저축액이 상이함

12) 김동겸(2021. 11. 15),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 **(예상을 하회하는 급여수준)**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악화됨과 동시에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리스터연금 가입 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령요건에 대해 저소득층의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2022년 출범한 신호등 연립정부[14]는 사적연금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예고함[15]

- 신호등 연정은 위와 같은 사적연금 부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후소득 수준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함
  - 이에 따라 옵트아웃(Opt-out) 조건을 갖춘 공공연기금의 설립과 스웨덴식 주식연금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독일 정부는 2005년 공적연금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Basisrente)이라 불리는 뤼룹연금(Rürup-Rente)[16]을 도입함

- 독일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의 의무가입 대상[17]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사적연금가입을 유인하는 '뤼룹연금' 제도를 도입함
  - 리스터연금과 달리 뤼룹연금 가입자는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으며,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입 이후 해지는 불가능함
- 납입된 보험료는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2005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지원 상한액 또한 점차 늘어남
  - 뤼룹연금의 보험료 납입액 대비 세제 해택 비율은 2005년 60%에서 2025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2022년 기준 최대 25,639유로[18]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음[19]
- 뤼룹연금의 계약실적은 2011년 약 149만 건에서 2020년 230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보유보험료는 2020년 기준 39억 유로에 달함

---

13) 동 수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함(자료: Geyer et al.(2021), "20 Years of the Riester Pension: Personal Retirement Provision Requires Reform")

14) 독일 연립정부는 각 당을 상징하는 색에 따라 이름을 붙임. 2022년부터 연립정부를 이루는 사민당의 상징은 붉은색, 자민당은 노란색, 녹색당은 초록색으로 마치 이 모습이 신호등과 같아 '신호등 연정'이라 칭함

15)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FDP(2021. 11), "Mehr Fortschritt wagen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und Nachhaltigkeit"

16) 연금의 이름 '뤼룹'는 당시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2002년에 설치한 뤼룹위원회의 위원장 베르트 뤼룹(Bert Rürup)의 이름에서 유래함

17)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 수공업자, 교사, 산파, 간병인, 예술인, 언론출판인, 해상안내원 등 특정 직종은 공적연금 의무가입 대상임

18) 해당 금액은 미혼자 기준이며, 기혼자의 경우 두 배에 달하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9) Finanztip(2022. 3. 31), "Nur für Selbstständige eine Option"

○ **뤼룹연금은 기초연금, 투자형(Unit-linked)연금, 즉시연금 3가지 형태로 구분됨[20)]**

- 기초연금은 일반적인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족연금 옵션을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연금을 배우자, 동거인 혹은 자녀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투자형연금은 DC형 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 가입자는 납입금을 펀드 혹은 주식투자를 통해 운용할 수 있음
- 즉시연금은 은퇴연령에 임박한 연금가입 희망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임

나. 장기요양보험 강화

○ **독일은 세계최초로 1995년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을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에 편입시켰으며 지속적인 법 개정 및 도입을 통해 수급권자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옴[21)]**

- 독일은 이미 1991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간병의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형식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
  - 장기요양단계(Pflegestufe)를 0~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장기요양수당(Pflegegeld)을 가족 간병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간병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함[22)]
  - 독일에서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 사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다음으로 사회보험을 지탱하는 다섯 번째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개선법(Pflege-Weiterentwicklungsgesetz), 2012년 새장기요양이행법(Pflege-Neuausrichtungs-Gesetz) 등 후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개선해 왔음

○ **2015~2017년에 걸쳐 시행된 장기요양강화법(Pflegestärkungsgesetz) 1,2,3은 치매환자의 급여수준 확대와 돌봄가족 처우 개선, 요양등급 재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23)]**

-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장기요양강화법 1은 시설 및 외래 장기요양 환자의 급여수준 및 돌봄가족 처우 개선, 장기요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의 설립,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요양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피보험자는 최소 월 104유로, 중증 치매환자 등 특별 돌봄이 필요한 피보험자는 208유로를 받을 수 있게 됨

---

20) Die Versicherer, Basisrente / Rürup-Rente

21) Portal-Sozialpolitik, Chronik Pflegeversicherung

22) 장기요양단계(Pflegestufe)는 MD(법정의료보험), MEDICPROOF(사적의료보험)가 제시하는 13가지의 척도를(위험상황 인지, 판단력, 기억력 등) 기준으로 0~3단계를 부여받을 수 있음

23) Pflege(2019), "Die Pflegestärkungsgesetze (PSG) I, II und III"

- 치매환자의 가족 및 친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피보험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단기보호(Kurzzeitpflege) 및 주·야간보호(Tages-und Nachtspflege)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됨[24]
- 대체수발(Verhinderungspflege)[25] 및 단기보호(Kurzzeitpflege)의 요건을 유연화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
- 피보험자가 가정 내에서 편하게 거동할 수 있도록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건당 최대 4,000유로를 지급함
- 보험료 상승을 통제하고 2035년까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의 0.1%를 적립하는 장기요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을 설립하고, 2015년 보험료율을 0.3% 인상함

•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된 장기요양강화법 2는 장기요양강화법 중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되는데, 동 개혁은 장기요양필요성(Pflegebedürftigkeit) 및 요양등급을 재정의함
- 장기요양강화법2는 치매환자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 또한 영구적인 신체질병을 앓고 있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기존의 3단계로 이루어진 요양단계(Pflegestufe)를 5등급으로 구분하는 요양등급(Pflegegrad)으로 개편하고 신규 사정평가(Neues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하여 요양등급을 세분화함[26][27]
- 또한 이전에 요양단계를 받은 피보험자에게 자동으로 요양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개혁 이전에 받았던 혜택을 보장하고 기존의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함[28]

•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된 장기요양강화법 3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장기요양보험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가노인돌봄 요양 시 일어날 수 있는 청구사기 방지를 강화함
- 장기요양강화법 3는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지원센터(Pflegestützpunkt)를 설립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모함
- 또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질병금고(Krankenkasse)에게 감시권한을 부여하여, 재가노인돌봄 요양 시 일어날 수 있는 청구사기를 방지함

---

24) 단기보호(Kurzzeitpflege)란 수급권자의 질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시설보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서비스이며, 주·야간보호(Tages-und Nachtspflege) 보호는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및 친척이 자리를 비워야할 때, 환자를 잠시 요양시설에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임

25) 대체수발(Verhinderungspflege)이란 6개월 이상 수급권자를 간병해 온 돌봄 가족이 질병, 휴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26) Pflege(2022), "Pflegebedürftigkeit-Definition des Pflegebedürftigkeitsbegriffs"

27) 피보험자는 ① 기동성(10%) ②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15%) ③ 행동 및 심리 문제(15%) ④ 자기부양능력(40%) ⑤ 질병관리능력(20%) ⑥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 활동 능력(15%)에 따라 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됨

28) 기존의 요양단계 0~1단계 피보험자는 2등급, 기존 1~2단계는 3등급, 기존 2~3단계는 4등급, 기존 3~3단계(중증환자)는 5등급을 부여받아, 요양 1단계에 해당하는 기존 피보험자는 존재하지 않음

○ 2022년 독일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음

〈표 1〉 2022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별 한도액

(단위: 월)

구분		요양등급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노인 돌봄	현금급여	-	316€	545€	728€	901€
	현물급여	-	724€	1,363€	1,693€	2,095€
요양시설 돌봄	주간보호	-	689€	1,298€	1,612€	1,995€
	단기보호	-	1,775€(4주~8주)			
	대체수발	-	1,612€(6주)			
	간병소비재	40€				
	수리 및 개조	4,000€/건				
	요양시설	125€	770€	1,262€	1,775€	2,005€

자료: Pflegestützpunkt(2022. 1. 1), "Leistungstabelle der Pflegeversicherung(SGB XI) Stand"에서 발췌함

3. 독일 보험산업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 독일에는 치료나 간병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한 요양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음[29)]

- 독일 정부가 사회보험에 편입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돌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비용은 증가하고 있음[30)]
  - 월간 자기부담비용은 2018년 평균 1,772유로에서 2020년 평균 2,068유로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요양등급에 따라 피보험자가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법정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상이함[31)32)]
- 이에 따라 독일 보험시장에는 치료나 간병 비용에서 비롯되는 자기부담비용을 줄이고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요양수당보험, 장기요양비용보험과 연금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연금보험 상품이 활성화돼있음

29) Pflege(2022), "Pflegezusatzversicherung: finanzielle Vorsorge für die Pflegebedürftigkeit"

30) Handelsblatt(2021. 7. 9), "Wie viel ein Pflegeheim kostet und was der Staat zahlt"

31) vdek(2022), "Leistungen der sozialen Pflegeversicherung und Eigenanteil in EUR 1. January 2022"

32) 요양등급에 따라 법정 장기요양보험이 평균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은 2022년 1월 기준 1등급: 0.5%, 2등급: 26%, 3등급: 36%, 4등급: 45%, 5등급: 48%로 집계됨

○ 장기요양수당보험(Pflegegeldversicherung)은 피보험자의 돌봄형태와 관계없이 일일 간병수당을 지급하는 보험임

- 일정기간동안 일일 수당형태로 지급되는 장기요양수당보험은 피보험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존재함
- 요양등급 5급의 피보험자가 받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 요양등급이 수령하는 금액을 백분율로 정하는 정액제와 계약자가 요양등급에 따라 일일 간병수당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탄력제가 존재함
- 또한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요양수당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보험계약자는 보충형 민영 요양보험(Pflege-Bahr)을 신청하여 건강검진 없이 동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충형 민영 요양보험(Pflege-Bahr)은 독일 정부가 공적 장기요양 급여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 지원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월 납입 보험료 10유로 이상인 장기요양수당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5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동 지원을 받는 보험계약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신청부터 수령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장기요양비용보험(Pflegekostenversicherung)은 법정 장기요양보험으로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간병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임

- 장기요양비용보험의 계약자는 치료나 간병과 관련한 영수증 제출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입증함으로써 자기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보험금의 지급 유형은 두 가지로, 계약 시 상품에서 미리 약정한 연간 최대 비용까지 지급하는 방법과 발생한 간병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 간병 비용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보장범위는 20%에서 200%까지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 장기요양연금보험(Pflegerentenversicherung)은 피보험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등급에 따라 월별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임

- 장기요양연금보험은 일반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보험가입자는 월 납입을 통해 요양 연금이나 일시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요양 5등급을 받을 시 계약 시 약정한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금을 기준으로 등급이 낮을수록(2등급~4등급) 그 비율이 낮아짐
  - 간병이 필요하지 않거나 요양 1등급을 받은 보험계약자의 경우 사망 시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약정한 최소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며, 성과가 좋을 경우 계약자는 이익잉여금이 포함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표 2〉 독일의 사적 장기요양보험상품의 장·단점

상품	장점	단점
장기요양수당보험 (Pflegegeldversicherung)	• 유연한 보험료 설정 가능 • 보장받을 간병의 종류 선택 가능 • 간병비용 입증 불필요 •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사망 혹은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 건강상태와 연령에 따른 보험료 산정 • 지병이 있는 경우 보험료 상승 혹은 급여 축소
장기요양비용보험 (Pflegekostenversicherung)	• 간병비용 부담 완화 •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 간병비용 입증 필요 • 가족 혹은 친구가 간병 시 보험금 수령이 어려움 • 피보험자가 요양시설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시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불가 • 건강상태와 연령에 따른 보험료 산정
장기요양연금보험 (Pflegerentenversicherung)	•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가능 • 요양등급 증명 불필요 •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가능 • 확정된 보험료 납부 • 해약환급금 수령 가능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보험금 산정 • 비교적 높은 보험료

자료: Pflege(2022), "Pflegezusatzversicherung: finanzielle Vorsorge für die Pflegebedürftigkeit"

특 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영국편

1. 영국의 고령화 현상

○ 영국은 일찍이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를 거쳐 현재 5명 중 1명이 고령층(65세 이상 인구)에 속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 2020년 기준 영국의 6,710만 명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20%에 근접함(〈그림 1〉 참조)[1)]
- 2020년 기준 영국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74명으로, 이는 한국의 1.08명보다는 높고 중국, 미국,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임(〈그림 2〉 참조)[2)]

〈그림 1〉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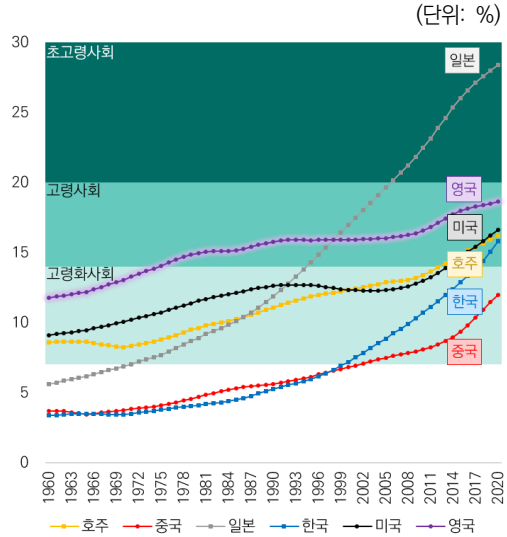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2022a)

〈그림 2〉 주요국 합계출산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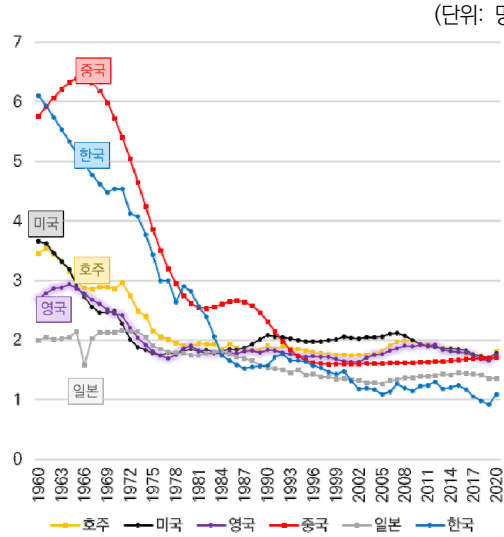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2022b)

1) 세계은행(2022a),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of total populati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65UP.TO.ZS?locations=GB-AU-CN-KR-US-JP)

2) 세계은행(2022b), "Fertility rate, total(births per woma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view=chart&locations=KR)

○ 2022년에 태어나는 영국 출생아들의 기대수명은 90세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나 영국의 인구 증가율은 감소할 전망임

- **(기대수명)**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영국 출생 인구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88세, 여성이 90세로 한국과 비교하여 남성은 7세, 여성은 3세 정도 높은 수준임(〈표 1〉 참조)[3]
  - 2022년에 출생한 영국 남성의 14.2%, 여성의 19.6%가 10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기대됨

〈표 1〉 기대수명

구분	남성	여성
영국	88세	90세
한국	81세	87세

주: 영국은 2022년 출생 인구, 한국은 2020년 출생 인구
자료: 각국 통계청

〈그림 3〉 영국의 인구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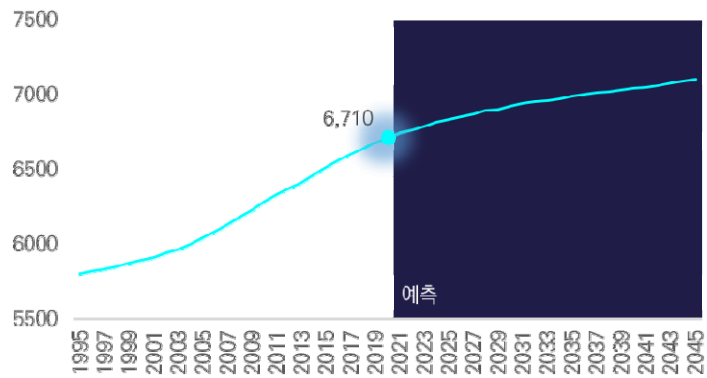

자료: 영국 통계청(2022)

- **(인구)** 2020년 영국 인구는 6,710만 명이었으나 향후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5년에는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그림 3〉 참조)[4]
  -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출생 인구 및 사망 인구 외에도 이민자 순유입 인구가 있음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 인구 대비 연금 수급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Old-Age-Dependency Ratio; OADR)는 2020년 기준 57.1%로,[5] 한국의 23.0%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6]
  - 현재 영국에서 노년부양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연금재정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음
- **(생산 활동)** 영국 정부가 국가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2018년~2020년에 걸쳐 65세에서 66세로 점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2021년에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노동 인구가 기록적으로 증가함[7]
  - 2021년 기준 65세 남성의 고용률은 42%로 1970년대 이후 최고치, 여성의 고용률은 31%로 역대 최고치일 것으로 추정됨

4) 영국 통계청(2022),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2020-based interim"
5)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kingdom/age-dependency-ratio-percent-of-working-age-population-wb-data.html
6) 조선일보(2021. 7. 3), "생산인구 줄고, 성장률 하락, 부양비 증가…인구 센서스로 본 '우울한 대한민국'"
7) IFS(2022. 1. 25), "Labour market effects of the increase in the state pension age from 65 to 66"

2. 영국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

○ 영국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층의 연금 체계 중 제1층에 해당하는 국가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영국의 국가연금 수급 개시 연령(State Pension Age; SPA)은 2018년에 65세로 높아졌고, 2020년 10월에는 66세로 상향 조정됨[8)]
- 영국 정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은 연금 재정 상황과 변화하는 기대수명 예측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표 2〉 참조)
  - 현재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1977년 4월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연금 개시 연령을 2044~2046년에 67세에서 68세로 인상할 계획에 있으나, 인상 시기를 2037~2039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23년 5월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9)]
  - 반면 최근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미래 인구의 기대수명 예측 결과에 따르면,[10)] 기존의 예측보다는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시연령 인상 계획을 지연 또는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11)]

〈표 2〉 영국 국가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인상 일정

개시 연령		인상 시기	적용 대상
현행 →	65세	⤵ 2018~2020년	1953년 12월 6일~1960년 4월 5일 출생자
	66세	⤵ 2026~2028년	1960년 4월 이후 출생자
	67세	⤵ 2044~2046년	1977년 4월 이후 출생자
	68세		

○ 영국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을 지급하여 국가연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수당과 저축을 장려하는 저축수당으로 구성됨[12)]

- 국가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이면서 총 소득[13)]이 기본소득 기준금액[14)]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기준금

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10231/spa-timetable.pdf
9) DWP(2021. 12. 14), "Second State Pension Age Review launches"
10) ONS(2022. 1. 12), "Expectation of life, principal projection, UK"
11) Financial Times(2022. 1. 14), "State pension plans: pressure set to grow on UK government"
12) Which?(2022. 4), "Pension credit explained"
13) 국가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임
14) 독신의 경우 주당 £182.6(한화 약 30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78.7(한화 약 45만 원)임

액과 소득의 차액만큼 보증수당(Guarantee credit)이 지급됨

- 또한 간병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손자녀 등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주택비용 또는 난방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됨

• 고령자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법정 퇴직연령이 지났음에도 소정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가 국가연금 이외에 연금계좌나 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수당(Savings credit)이 지급됨[15)]

• 위와 같은 연금 크레딧을 신청하면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고령자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나, 현재 연금 크레딧의 적격자 중 3분의 1 정도가 연금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연금 크레딧의 수급 대상이 되면 무료 치과치료, 병원 이송 서비스, 돋보기 안경 비용 지원 등이 제공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16)]

○ **또한 영국 정부 및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기 노동자의 DC형 퇴직연금 수수료 규제, 개인연금 디폴트옵션 등이 도입됨**

• 영국은 고령자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비슷한 국가로, 고령 가구[17)]의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 중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각 40%를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함[18)]

- 이와 비교하여 유럽의 주요국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70~8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며, 네덜란드, 캐나다는 영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2022년 4월부터는 단기 노동자의 적립금 운용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규모 적립금의 가입자에게 고정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함[19)]

- 직장이 변경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이 IRP 계좌로 이체되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별도의 여러 계좌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단기로 빈번하게 직장이 변경되는 노동자의 경우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게 됨
- 이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여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는 계좌에도 기여금의 납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표 3〉 참조)[20)]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의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총 적립금 규모가 £100(한화 약 16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단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만 고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5) 단, 2016년 4월 이전에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만 저축수당의 적용 대상이 됨

16) Age UK(2022. 4. 14), "Pension Credit"

17) 가장 주된 소득을 창출하는 구성원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18) Financial Times(2019. 12. 18), "Unions turn up heat on Emmanuel Macron over pensions overhaul"

19) Professional Pensions(2022. 4. 1), "Rules to protect small pension pots come into force"

20) DWP(2022. 1. 10), "New rules to protect value of small pension pots laid in Parliament"

〈표 3〉 영국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별 상한규정

구분	내용
수수료 체계 ①	적립금 전체의 0.75% 이하
수수료 체계 ②	(당해 기여금의 1% 이하 + 적립금 전체의 0.6% 이하) 또는 (당해 기여금의 1% 초과 2.0% 이하 + 적립금 전체의 0.5% 이하) 또는 (당해 기여금의 2% 초과 2.5% 이하 + 적립금 전체의 0.4% 이하)
수수료 체계 ③	기여금의 납입과 관계없이 (연 £10 이하의 고정수수료 + 적립금 전체의 0.6% 이하) 또는 (연 £10 초과 £20 이하의 고정수수료 + 적립금 전체의 0.5% 이하) 또는 (연 £20 초과 £25 이하의 고정수수료 + 적립금 전체의 0.4% 이하)

주: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는 위의 세 가지 수수료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함
자료: DWP(2022)

- 또한 영국 정부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소득이 1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가입연령 또한 22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함[21)]
- 현재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채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어,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신규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제공이 의무화될 예정임[22)]
  - 새롭게 도입될 규정에 따르면 개인연금 사업자는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신규 가입자[23)]에게 디폴트옵션을 제시해야 하나, 가입자가 이를 채택할 의무는 없음[24)]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개인연금에 대해 디폴트옵션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최종 규칙을 2022년 중 발표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임

○ **영국은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라 함)를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주로 민간기업들이 NHS 서비스를 대행하여 제공하고 있음[25)]**

- NHS 서비스는 1989년부터 민간기업들이 서비스를 대행하기 시작하고 2012년 건강 및 사회적 케어법[26)] 제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됨
  - 현재는 요양보호시설 기업 Care UK, 헬스케어 기업 Practice Plus Group, 부인과 의료서비스 기업 HCRG Care Group 등의 민간기업들이 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1) Financial Times(2022. 2. 10), "Pension auto-enrolment: 'abandon £10,000 threshold'"
22) FCA(2021. 11), "Improving outcomes in non-workplace pensions", CP21/32
23) 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가 투자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4) 참고로 영국의 DC형 퇴직연금에는 이미 디폴트옵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채택되게 되어 있음.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92%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25) 오영수(2021),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박영사
26) Health and Social Care Act of 2012

3. 영국 보험산업의 인구고령화 대응

○ 영국의 여행자보험은 그동안 가입자에게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익스트림 스포츠, 의료사고 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고령자 맞춤 여행자보험상품들이 출시됨[27]

- 고령층은 의료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고 갈취, 소매치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기피되어 왔으나 여가를 즐길 시간이 더 많아 이들에게 특화된 보험이 필요함
- 50대 이상의 여행자를 타겟으로 하는 보험회사 Staysure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하여 비행기 지연, 소지품 분실 등의 사고보다는 응급 의료사고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지님
- 여행자보험 전문회사 AllClear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제트스키,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승마, 사이클링 등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보장하고 있음[28]
  - 유병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겨울 스포츠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연령이 제한되기도 함

○ 자동차보험은 고령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41%의 보험상품이 가입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자 맞춤 자동차보험상품들은 연락망 서비스, 여행, 운전 강습 등을 지원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

-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현재 영국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
  - 70세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력과 기타 건강 관련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29] 70세 이상 영국인의 운전면허 보유 비율은 2000년 40%에서 2010년 57%, 2020년 77%로 증가함[30]
  - 영국에서는 표준적인 자동차종합보험상품의 41%가 가입자의 연령상한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70대로 제한하고 있는 상품이 22.5%, 80대로 제한하고 있는 상품이 18.5%로 조사됨[31]
- 영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영국의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기관들은 연령제한으로 가입이 거절되는 소비자들을 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기관협회(British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BIBA)의 안내서비스로 연결해 왔음[32]

---

27) ITIJ(2019. 10. 28), "Insuring an ageing population"

28) AllClear(https://www.allcleartravel.co.uk/travel-insurance/seniors/over-70s/)

29) https://www.gov.uk/health-conditions-and-driving

30) 영국 교통부(2021. 9. 22), "Driving licence holding and vehicle availability"

31) i news(2021. 5. 29), "How rising car insurance premiums and age limits are leaving older drivers reeling"

32) BIBA(2022. 4. 25), "Ten Years of Insurance Signposting Helps Older Drivers and Holidaymakers"

- 영국 정부가 2012년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및 BIBA와 맺은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기관은 연령제한으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타 보험회사 또는 BIBA의 안내서비스로 소비자를 연결시켜주어야 함
- BIBA 안내서비스는 지난 10년간 86만여 건이 이용되면서 고령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돕는 데 기여함

• Age Co의 자동차보험은 연령상한이 없는 고령자 맞춤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계약자의 친구 또는 친척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는 연락망 서비스(Message Relay Service)를 제공하며,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은퇴 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33)]

• Saga의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은 첫 3년간 갱신 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최대 4시간의 운전 강습을 지원하고 계약자 및 그 배우자의 약물치료 또는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사고를 보장하기도 함[34)]

-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감소하지만, 평균적으로 70세부터는 보험료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Saga는 70세 이후에도 3년간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 부담 증가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보험회사에 장수리스크를 이전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거래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35)]**

•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 지급 채무가 증가함[36)]

• 보험회사에 장수리스크를 이전하는 거래로는 대규모 연금이전(Bulk annuity)과 장수 스왑(Longevity swap)이 있음

- 대규모 연금이전이란 연금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일시납 보험료를 지불한 후 보험회사가 연금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급부를 제공하는 거래로, 바이인(Buy-in) 거래[37)]와 바이아웃(Buy-out) 거래[38)]로 구분됨[39)]
- 장수 스왑은 연금사업자가 고정지급금을, 보험회사가 변동지급금을 서로 교환하여 지급하는데, 가입자의 생존기간이 예측치과 동일할 경우 두 지급금이 동일하게끔 산정함으로써 연금사업자의 불확실

33) https://www.ageco.co.uk/insurance/car-insurance/over-80s/

34) https://www.saga.co.uk/insurance/car-insurance/over-70s

35) InsuranceERM(2022. 1. 19), "Bullish outlook for UK's bulk annuity market in 2022"

36) 김유미(2020. 4. 13),「해외 장수리스크 이전거래 시장 동향」,『KIRI 리포트』, 글로벌이슈, 보험연구원

37) 바이인 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급부를 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가입자에게는 연금사업자가 기존의 연금 지급의무에 따라 급부를 제공함

38) 바이아웃 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급부를 직접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연금계약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보험회사가 이전 받아 바이인 거래에 비해 거래가격이 더 높음

39) https://www.aon.com/unitedkingdom/retirement-investment/risk-settlement/bulk-annuities-explained.jsp

성을 해소하는 거래임[40]

- 두 가지 형태의 총 거래 규모는 2022년에 역대 최고치인 £65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대규모 연금이전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둔화로 거래규모가 감소하였으나(£77억), 2021년 하반기에 거래가 급증하며(£200억) 증가세를 회복하였고, 현재 많은 보험회사가 거래계획을 밝힌 가운데 2022년에는 £400억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대규모 연금이전 거래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Legal & General,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Rothesay이며 최근에는 Aviva도 같은 대열에 합류함
  - 장수 스왑의 경우에는 2020년보다 약간 증가한 £250억의 거래규모가 2022년에 예측되고 있음
- 향후 솔벤시Ⅱ 개혁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규제가 완화되면[41] 장수리스크 이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증가하고 장수리스크를 보유함에 따른 리스크마진 부담은 경감되어, 대규모 연금이전과 장수 스왑의 거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42]

40) 장수 스왑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어 중소 연금사업자보다는 대규모의 연금사업자가 선호하는 거래임 (https://www.aon.com/unitedkingdom/retirement-investment/risk-settlement/longevity-swaps-explained.jsp)

41) 리스크마진과 매칭조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42) LCP(2022. 2. 25), "Reform of solvency requirements on insurers c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pension buy-out market"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09호 [2022년 봄호]

발 행 일 2022년 6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26)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